

# 朝鮮後期 濟州島 土地賣買의 實狀\*

高 昌 錫\*\*

## — 목 차 —

- I. 머리말
- II. 田畓文記의 樣態
- III. 田畓取得의 經緯
- IV. 田畓放賣의 事由
- V. 面積과 價格의 表示
- VI. 結 論

## I. 머리말

朝鮮朝에 와서 土地의 매매가 공식적으로 허용된 것은 世宗 6년(1424)부터였다.<sup>1)</sup> 『朝鮮王朝實錄』 世宗 6년 3월 己亥條에,

京畿監司가 아뢰기를, “대체로 토지를 파는 사람은 모두 다 부모의 喪事와 葬事를 치르기 위한 것이거나 묵은 빚(宿債)과 贖罪할 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집이 가난해서 살아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노릇인데, 그 땅값을 官에서 모두 몰수해 버린다는 것은 적지 않게 억울한 일입니다. 또 서울 안에서는 집터나 텃밭까지도 팔게 하면서 지방에서만 토지의 매매를 금지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지 말도록 하되, 國稅를 청산하지 않았거나 관청의 수속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만 (大明) 律에 따라 처리하실 일입니다.” 라고 하니, 律文에 따라 시행하라 하고 그 밖에 정해 놓은 기한 안에 토지나 집을 판 것은 證明文件(明文)에 의하여 판결

\* 이 연구는 1995년도 제주대학교 발전 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1) 朴秉濠: 『韓國法制史攷』 法文社 1989, p. 14.

해 주라고 명하였다<sup>2)</sup>

고 하여, 종래 금지되어 오던 토지나 집의 매매가 京畿監司의 啓請에 의해 解禁된 것이다. 그러나 田宅의 매매는 15일을 기한으로 하되 변경시키지 못하며, 모두 매매 계약이 있는지 100일 이내에 官에 신고하여 立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sup>3)</sup> 官의 입안 발급 절차는 (가) 買受人이 新·舊文記를 첨부하여 입안을 신청하는 所志를 관에 제출하면, (나) 관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입안 발급 결정에 대한 題音을 소지의 餘白(左側下段)에 기입하여 되돌려 주고, (다) 賣渡人(財主)·證人·筆執으로부터 매매 사실을 확인하는 招辭(陳述)를 받은 후에, (라) 입안을 만들어 발급하게 된다. 이러한 官의 立案制度는 후기까지 일부 행해지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실시 초기부터 철저히 수행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sup>4)</sup> 壬亂前後로부터는 立案 없이 新·舊文記의 引導로 매매가 성립되는 것이 지배적인 경향이었다.

전담문기에는 먼저 전담방매의 年月日과 買受者의 성명을 기록하고 그 다음으로 전담방매의 사유를 밝히고 있다. 또 당해 전담의 취득 경위와 전담의 소재지 및 위치(4標)를 들고 그 면적, 전담의 가격, 後日의 擔當, 즉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賣渡者는 買受人에게 新文記 외에 本文記(舊文記) 등의 讓渡 여부를 약속하고, 끝으로 자기의 성명 외에 證筆의 성명을 기록하여 그 아래에 각각 手決·左寸·手掌·右寸 등으로 捺印을 대신하고 있다. 더욱이 전담의 매매문기에는 '永永放賣'란 문구가 예외 없이 사용되고 있다.<sup>5)</sup>

本稿는 南濟州郡 南元邑 衣貴里 慶州金氏<sup>6)</sup> 집안에 所藏되어 있는 일련의

2) 京畿監司啓 凡田地放賣人 或因父母喪葬 或因宿債收贖 或因家貧不能自存 皆緣不得已之事 而其價錢並皆沒官寬抑不少 且京中造家基地菜田猶許放賣 獨外方田地禁其買賣未便 請毋禁買賣其不稅契不過割者 依律施行 命依律文施行 其限年放賣田宅 從明文決給

3) 『經國大典』戶典 買賣限條에 「田地家舍買賣 限十五日勿改 併於百日内告官受立案 〈奴婢同〉」이라 하였다.

4) 朴秉濂：前掲書 p. 43.

崔承熙：『韓國古文書研究』知識産業社 1989. p. 388.

5) 朴秉濂：前掲書 p. 43.

崔承熙：前掲書, p. 388.

6) 慶州金氏 入島祖 金儉龍의 7대손인 金萬鎰의 家系이다. 김만일은 宣祖·光海君 시대의 인물로, 壬辰亂 후 戰馬 貢獻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그 자손은 대대로 山馬監牧官의 職任을 이어 받았었다. 주거지는 衣貴里와 保閑里(현 秦

田畚文記를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朝鮮後期 제주도의 토지매매의 實狀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 것이다. 筆者는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이미 西歸浦市 中文洞에 거주하는 高在一氏 所藏의 田畚文記를 분석한 바 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전담문기는 총 51건의 土地賣買 문서인데, 일부이기는 하나 相換文記와 和議文記도 포함되어 있다. 文記의 작성 시기는 朝鮮朝 光海君 12년(1620)으로부터 隆熙 3년(1909)에 이르는 것이다. 이를 시대순으로 배열해 보면 '표1'과 같다. 매매 시기를 나누어 보면 光海君 2건, 仁祖 2건, 孝宗 2건, 顯宗 10건, 肅宗 20건, 英祖 8건, 憲宗 2건, 哲宗 2건, 高宗 2건, 純宗 1건 등이다. 이것으로 보면 顯宗·肅宗·英祖 때에 토지의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本稿의 분석 범위도 자연 위의 시기가 되겠으며,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東南部의 일부 지역에 局限하게 된다.

本稿에서는 매매문기의 내용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田畚賣買의 慣行과 文記의 樣態를 우선 살펴보고, 다음으로 토지의 取得經緯와 放賣事由, 그리고 매매 가격과 토지의 면적, 재배 작물 등이 분석될 것이다.

‘표1’

番號	年 代	買受者	賣渡者	番號	年 代	買受者	賣渡者
1	光海 12.1620	金大吉	洪梯源	27	肅宗 24.1698	金羽遷	玄氏
2	" 13.1621	"	-	28	" 24.1698	金興德	洪武申
3	仁祖 10.1632	"	成極眞	29	" 24.1698	"	宋承興
4	" 26.1648	"	金大振	30	" 25.1699	"	高泰吉
5	孝宗 8.1657	--	金挺西	31	" 26.1700	金羽遷	金致玉
6	" 10.1659	金 璠	高門甲	32	" 35.1709	金主簿	金□□
7	顯宗 1.1660	"	金以海	33	" 39.1713	"	金時會

興里)였다. 土地文記와 관련된 家系圖를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숫자는 件數. 그런데 金興德의 경우, 주로 首奴 禾來同을 시켜 토지를 買入했는데(7건), 家系圖上에서는 未詳이며, 文記에 이름이 탈락된 것(3건)도 있다.

金萬鎰—大吉—璠—羽遷—南獻—鎮基—鼎台—瓊瑞—昌兌—聖彖—曠治—熙股  
5 15 9 3 2 5 2

金萬鎰家の 身分 및 家系構成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조성운: 「조선후기 제주도 지배세력에 관한 연구—경주 김씨의 호구단자를 중심으로—」 『郷土史研究』 5, 韓國郷土史研究全國協議會 1993. pp.175-184.

7) 拙稿: 「朝鮮後期 濟州島 田畚文記의 研究—高在一氏 所藏文記를 중심으로—」 『耽羅文化』 13,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3. pp.81-123.

番號	年 代	買受者	賣渡者	番號	年 代	買受者	賣渡者
8	" 8, 1667	"	宋彦合	34	" 39, 1713	"	康義獻
9	" 11, 1670	"	李汝立	35	" 39, 1713	"	梁汝楹
10	" 12, 1671	"	金 生	36	" 39, 1713	金羽遷	金喜兩
11	" 12, 1671	"	古 生	37	英祖 17, 1741	金鎮基	吳命漢
12	" 12, 1671	"	夫興弼	38	" 20, 1744	"	玄烏股
13	" 12, 1671	"	吾 夫	39	" 27, 1751	"	金時獻
14	" 12, 1671	"	金鼎五	40	" 32, 1756	金鼎台	姜尚文
15	" 13, 1672	"	高就斗	41	" 34, 1758	高漢英	高世歡
16	" 14, 1673	"	金元弼	42	" 39, 1763	金鼎台	梁重龍
17	肅宗 1, 1675	金羽遷	豆 屎	43	" 40, 1764	-	金鎮宅
18	" 4, 1678	-	良 生	44	" 47, 1771	金鼎台	高漢英
19	" 10, 1684	金興德	鐵 金	45	憲宗 14, 1848	金聖彙	金鎮悅
20	" 12, 1686	金 璠	金尚筠	46	" 15, 1849	"	金宗赫
21	" 12, 1686	"	洪應鶴	47	哲宗 2, 1851	"	金光春
22	-- - --	"	宋 翰	48	" 2, 1851	"	金義悅
23	肅宗 12, 1686	金興德	高致星	49	高宗 7, 1870	"	鄭師僑
24	" 12, 1686	金 璠	金 崑	50	" 22, 1885	金熙股	韓相國
25	" 22, 1696	金興德	池世龜	51	純宗 3, 1909	"	마을
26	" 23, 1697	"	高春敬				

## II. 田畚文記의 樣態

전답문기는 일정한 양식<sup>8)</sup>의 문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牌紙로 행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不忘記나 手記로써 매매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형식이나 내용도 다양각색이었다. 설사 매매 형식의 문기라 하더라도

8) 『儒胥必知』에 수록되어 있는 田畚文記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大國年號幾年甲子某月某日某前〔處〕明文

右明文事段 切有緊用處 某邑某面某里伏在 某字第幾畚幾員幾束幾斗落幾夜味庫

叱果 某字第幾田幾負幾束幾日耕 願買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族屬中 如

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告官卞正事

財主姓名着名

證人姓名着名

筆執姓名着名

시대와 지역, 또는 작성자에 따라 용어와 吏讀가 다소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제주도 내에 현존하는 문기에서는 韓國 본토에서 발견되는 문기와 다른 면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제주도 내의 문기에는 千字文 순위의 地番이란 것이 표시되고 있지 않으며, 화폐에 의한 매매<sup>9)</sup> 사실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토제매매시의 한두 가지 慣行과 相換文記 및 和議文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家奴名義로 文記를 작성하는 경우

天啓元年辛酉 四月十二日 金大吉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京中居人以 上典牌旨持來 同班奴婢等亦中 收貢捧上次以 濟州入來時 適音兇荒癘疫乙仍于 班奴婢等處 收貢以乎新反 朝夕永絕 飢死丁寧 爲乎等以 人建重事以 勢不得已 無子息無同生身故爲在 禿白田等庫乙 依法典統 如同人處 烘爐望員 粟種□□付只 東望·南故金道關田 西官田·北女位卜田 及 西歸堂員 粟捌升付只 東堂·南安奉享田·西女生羌田·北路等 兩庫四標分明 田庫價本 山稻壹石捧上爲遺 永永放賣爲去乎 後次某人是乃雜談爲去等 此文記內乙 用良 告官卞正事

田主	京 曹司宅 奴 興 龍(左寸)
證人	莫 斤(手決)
	土 男
筆執	金慶一(手決)

위의 明文은 天啓 元年 辛酉 즉, 光海君 13년(1621) 4월 12일에 서울에 사는 曹司宅<sup>10)</sup> 奴 興龍이 上典의 위임을 받고 제주도에 내려와 金大吉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文記이다. 우선 明文의 내용을 풀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明文을 (작성)하는 일인 즉, 이몸은 서울에 사는 사람으로 上典의 牌旨를 가지고 와서 同 班奴婢들에게 身貢을 거두어 받을 양으로 濟州에 들어 왔을 때, 마침 兇荒과 癘疫으로 말미암아 班奴婢들에게 身貢을 거두기는 커녕 朝夕으로 영원히 끊어져 굶어 죽었음이 틀림 없는 까닭으로, 人事에 관한 중대한 일로 하는 수 없이 子息도 없고 同生(兄弟姉妹)도 없이 사망한 禿白田들

9) 『濟州啓錄』 道光 26년(憲宗 12, 1846) 5월 초 2일자 의 狀啓 내용에 의하면, 「本島不用錢貨 代用布木」이라 하여, 貨幣 대신에 배나 무명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高宗代 이후 文記의 경우 화폐의 使用例가 보이고 있다.

10) 曹司宅의 曹司는 官職·階級 또는 才能이 모두 末位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을 法典에 따라 그대로 同人에게 烘爐望員의 粟種(좁씨)? 부치기(東쪽은 望, 南쪽은 故 金道關의 밭, 西쪽은 官田, 北쪽은 女 位卜의 밭) 및 西歸堂員의 粟(조) 여덟 되부치기(東쪽은 堂, 南쪽은 安奉享의 밭, 西쪽은 女 生羌의 밭, 北쪽은 路) 등 두 곳의 4표가 분명하고 밭 값은 밭벼(산되 : 山稻) 한 섬을 받고 영원히 방매하므로 뒤에 누구든지 雜談을 하거든 이 文記 내용으로써 官에 告하여 바로 잡을 일.”

그런데 위 文記의 서두를 보면, 서울에 사는 曹司宅 奴(종) 興龍이 上典으로부터 牌旨로 委任을 받아 토지를 賣渡하고 있다. 즉 위 文記에서는 서울에 사는 曹司宅 奴 興龍이 토지방매의 당사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朝鮮 시대에 있어 兩班은 賣物이 있어도 직접 賣買에 관계하지 않고 집에 데리고 있는 奴에게 牌旨(牌子)를 주어 형식상 매도하는 일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패지를 받은 家奴는 상전의 뜻을 받들고 買受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 文記(賣買契約書)를 작성하여 買受人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이를 新文記라 하며 牌旨와 舊文記도 함께 引導된다. 그리고 家奴는 賣物價를 引受하여 上典에게 드리게 된다.<sup>11)</sup> 즉 朝鮮朝 後期로 내려오면서 士大夫 계급은 체면상 전담매매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忌避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士大夫 계급이 전연 매매의 당사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士大夫家에서는 전담의 매매 때에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奴子를 그 당사자로 내세우는 일이 많았던 것이다.

위 文記 작성 때에 證人으로는 莫斤과 士男이, 筆執으로는 金慶一이 각각 立會하여 성명 아래에 手決(花押)을 하고 있다. 手決은 財主가 士大夫家의 夫人일 경우에는 押印, 良人 이상의 남자는 手決을 한다. 또 신분이 賤民일 경우에는 手寸(奴: 左寸 또는 左手寸)·手掌(婢: 掌押 또는 右手寸)을 하게 되는데, 手寸인 경우는 가운데손가락의 가운데 마디를 표시한다. 그리고 賣渡人인 경우 曹司宅 奴 興龍이라 하였는데, 이는 兩班家에서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 항상 [某宅奴某]라는 名義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또 文記 末尾에 “뒤에 누구든지 잡담을 하거든 이 문기 내용으로써 官에 告하여 바로 잡으라”고 한 것은 賣渡 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관에 고하여 해결할 것을 約定한 것이다.

11) 崔承熙: 前揭書 p. 388.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하나는 奴 興龍이 班奴婢들에게 身貢을 거두기 위해 濟州에 들어왔을 때, 흉년과 질병으로 인하여 신공을 바쳐야 할 班奴婢들이 굶어 죽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때문에 사망한 班奴婢들이 小作해 오던 토지를 法典에 의거하여 放賣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法典의 내용은 「經國大典」 刑典 公賤條의

公賤無子女身死者 奴婢田宅屬於本司本邑 〈私賤則并其財產許本主區處〉

라 한 조항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公賤으로 자녀 없이 사망한 자의 노비와 전택은 그 所管 官司와 그 고을에 귀속된다”고 하였고, 그 註에 “私賤인 경우에는 그 재산을 모두 本主가 처리하도록 허락한다.” 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식도 형제자매도 없이 사망하여 경작자가 없는 전답을 법전에 의거하여 그 주인이 처리(放賣)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金大吉에게 방매한 것은 烘爐望員과 西歸堂員 두 필지이며, 그 가격은 밭벼(山稻) 한 섬이다. 여기서 말하는 班奴婢는 兩班所有의 노비를 의미한다. 다음과 같은 문기의 예도 있다.

康熙參拾伍年丙子 拾壹月拾參日 金興德宅首奴禾來同處明文

右明文事段 值此凶年 他無資生之路乙仍于 勢不得已 祖上傳來耕食爲如乎 縣地 尙尔 東北邊員 粟種肆升落只田 四標段 東故高門甲田·西及南大路·西北金興碩田及買者田 四標爲等如分明田庫乙 價本段 實價布參疋 准計捧上爲遺 同宅永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 遠近族枝中 如有爭談者是去等 持此文記告官辨正事

田主 洪世龜(手決)

證人 夫繼江(手決)

證保 高世安(手決)

筆執 金貴蘊(手決)

위 明文은 康熙 35년 丙子, 즉 肅宗 22년(1696) 11월 13일에 田主 洪世龜가 金興德宅 首奴 禾來同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내용은 “흉년을 당하여 달리 資生할 길이 없기에 하는 수 없이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갈아먹던 縣地 尙尔의 東北邊員 粟種[좁씨] 너 되지기 밭을 實價布 3필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받고 同宅에 영원히 방매하므로, 뒤에 遠近族枝 중에 타투어 원망하는 자가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官에 告하여 바로 잡으라.”는 것이다. 證人·證保로 夫繼江과 高世安이, 筆執으로는 金貴蘊이 각각 印회하였다. 즉

여기서는 金興德宅의 首奴 禾來同이 전답매매의 당사자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買受人은 金興德이며 首奴 禾來同은 그 대리로 입회하였을 뿐이다. 本稿에서 다루고 있는 전답문기의 경우에 이러한 예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 (2) 本文記(舊文記) 引導의 與否

田畝文記 중에는 買受人이 文記上으로는 金氏家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乾隆二十三年丁丑 二月二十七日 高漢英處明文

右明文事段 矣身本以貧寒之人 值此殺年 生涯爲難乙仍于 同人處 正木三十尺貸用資生 而他無報給之物故 矣二禾雄馬一匹 放賣於牧子奴可外處 而妻父名字捧明文爲有在 金石磊北邊員 粟捌升落只田 四標段 東北金南標田·西南金元夏田 四標分明田庫 同人處 永永放賣爲乎矣 本文段他田并付故 不得許與爲去乎 日後若有爭望 持此文記 告官卜正事

田主 高世歡(手決)

筆執 金南星(手決)

위 明文은 乾隆 23년 丁丑,<sup>12)</sup> 즉 英祖 34년(1758) 2월 27일에 田主 高世歡이 高漢英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내용은 "이몸은 본디 貧寒한 사람인데 흉년을 당하여 생활이 어려운 탓으로, 同人에게 正木 30尺을 貸用하여 資生하고 달리 값아 줄 물건이 없으므로, 나의 두살배기 雄馬 한 필을 牧子 奴 可外에게 放賣하고 妻父名字로 明文을 받았던 金石磊北邊員의 粟 여덟 되지기 밭(4포 생략)을 同人에게 영원히 방매하되, 本文記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넘겨 주지〔許與〕 못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보면, 위 明文은 買受人이나 賣渡人이 金氏家와는 관련이 없는 高氏들인 것을 알 수 있다. 또 내용상에 두살배기 숫말 한 필을 牧子에게 放賣하고 明文은 妻父名義로 받았었다고 하였는데, 그 妻父가 누구인지는 未詳이다. 또 本文記〔舊文記〕는 '本文段他田并付故 不得許與爲如乎'라 하여 넘겨주지 않고 있다. 즉 本文記에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舊文記 중에는 다수의 토지 또는 토지와 함께 家屋이나 奴婢 등도 併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중 일부를 分割하여 放賣할 경우에는 新文記 작성시에 舊文記를 引導할 수 없다는 趣旨를 明記한다. 그리고 舊文記 중 매도하는

12) 乾隆 23년과 干支 丁丑은 어느 하나가 錯誤이다. 여기서는 年代를 따랐다.

토지의 表示處를 剋周(抹消)하여 背頌<sup>13)</sup>하고 이 背頌 사항을 官에 신고하여 證明을 받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것은 舊文記에 剋周하여 背頌하지 않으면 分割하여 賣渡한 사실이 證明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 구문기를 근거로 한 二重賣買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sup>14)</sup>

그런데 위 文記上에서는 비록 舊文記를 넘겨주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 文記가 金氏家에 所藏된 것은 토지를 매매할 때에 賣渡人이 買受人에게 賣物과 함께 舊文記를 넘겨주는 관례에 따라, 金氏家에서 高漢英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舊文記도 함께 넘겨 받았기 때문이다. 즉 다음의 문기가 이를 證明해 주고 있다.

乾隆參拾陸年壬辰 七月二十一日 金鼎台處明文

右明文事段 卽有要用之事故 同人處 正木壹疋貸出用下後 價本段 他無報給乙仍于 高世恒處買得爲在 金石磊北邊員 粟種捌升付只 四標段 東北金鼎德田·西南李東渭時起田 又付舊里南邊員 姜渭處價(買)得田 皮牟□□付 四標段 東西南無主田·北買者田 四標分明田庫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同生中雜談是去等 此文告官卞正事

田主 自筆 高漢英(喪不着)

위 明文은 乾隆 36년 壬辰,<sup>15)</sup> 즉 英祖 47년(1771) 7월 21일에 田主 高漢英이 自筆로 金鼎台에게 작성해준 문기다. 내용은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 同人에게 正木 한 필을 貸出하여 用下한 후, 값은 달리 갚아 줄 수 없는 탓으로, (A) 高世恒에게 買得한 金石磊 北邊員 粟種 여덟 되부치기, 4표는 동북쪽에는 金鼎德의 밭이, 서남쪽에는 李東渭의 時起田<sup>16)</sup>이며, 또 (B) 付舊里 南邊員의 姜渭에게 매득한 밭 皮牟 □□ 부치기, 4표는 동서남쪽에는 주인이 없는 밭이고 북쪽은 買者田으로 4표가 분명한 밭을 同人에게 영원히 放賣하므로, 日後에 同生 중에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官에 告하여 바로 잡으라.”는 것이다. 田主 高漢英은 喪中이므로 署名을 하지 않고 있다.

내용상으로 보면 高世恒은 高世歡의 錯誤로 보아지며, 따라서 高漢英이 英

13) 舊文記(本文記)의 일부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 변경된 부분을 背面에 表示(記載)하는 것을 말한다.

14) 朴乘濂: 前揭書 p. 16.

15) 乾隆 36년의 干支는 辛卯이고 壬辰은 37년의 干支이므로 어느 하나가 착오이다.

16) 개간하여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밭.

祖 34년(1758)에 高世歡(혹은 恒)으로부터 샀던 金石磊 北邊員의 粟種 여덟 되부치기 밭을 약 13년 뒤에 다시 金鼎台에게 방매하면서 넘겨준 本文記(舊文記)였던 것이다.

토지의 매매는 買受人과 賣渡人 쌍방의 合議 외에 목적물의 引導로써 그 契約이 성립된다. 그리고 이 합의와 인도는 明文 또는 新文記라는 契約書의 작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를 인도함으로써 소유권이 移轉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즉 매도인은 신문기는 물론 그 토지의 權利傳承의 由來를 증명하는 일체의 舊文記도 함께 인도하였다. 이 舊文記는 그 권리의 유래가 眞正하며, 그 권리를 처분하는 자가 진정한 權利者임을 증명하는 權原證書였다. 권리의 최초의 取得者는 新文記 뿐이나 이후의 取得 또는 移轉에는 반드시 구 문기를 具備하여야 하였다.<sup>17)</sup> 다음의 文記는 新文記 작성시에 舊文記를 함께 넘겨준다는 내용이 明記되어 있는 예이다.

同治九年庚午 正月初十日 金聖兼處明文

右明文事段 矣當此殺年 生道無路故 右人處 正木肆疋貳拾尺貸用後 價本段 他無邊通故 矣衿下田 所謂西義貴里內 甘上伊田員 皮牟柒升付 四標段 東北小路·南玄啓坤及都元春田·西童山 標分明田庫 永爲報給是矣 本文記段置 茲以許給爲去乎 後若有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卞正事

田主 自筆 鄭 師 僑(手決)

위의 明文은 同治 9년 庚午, 즉 高宗 7년(1870) 정월 10일에 田主 鄭師僑가 自筆로 金聖兼에게 작성해 준 문기로, 내용은 "이몸이 흉년을 당하여 살아 나갈 방도가 없으므로, 위의 金聖兼에게 무명 네 필 스무 자를 대출한 후 값은 달리 변동할 수 없기에, 이몸 몫으로 점지해 준 밭, 이른 바 西義貴里 내의 甘上伊田員 皮牟 일곱 되부치기, 4표는 동북쪽에 小路이고 남쪽에 玄啓坤 및 都元春의 밭, 서쪽은 동산으로 4표가 분명한 밭을 영원히 방매하되, 本文記도에 넘겨줌으로 후에 만약 잠담하는 폐해가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바로 잡으라."는 것이다.

### (3) 마을 소유의 田宅을 買得하는 경우

隆熙三年己酉 四月初三日 金熙殷處明文

17) 朴秉濠 : 前揭書 p. 15.

右明文事段 都舍四間一鞭 庫間一鞭及基地 皮牟貳斗付只是在 里中池巷員 四標  
東南買者田·西金柄植田·北大池 標分明而決價文 貳佰兩準捧後 如是成給明文  
放賣爲去乎 後若鄉員中 雜談之弊則以此憑考事

里任 金致文

洞長 鄭永福(手決)

尊位 金完重(手決)

東衣里里長 梁完吉(印)

東衣 (印)

위의 明文은 隆熙 3년(1909 乙酉) 4월 초 3일에 東衣里 里長 梁完吉이 金熙  
殷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都舍 4칸 한 채, 庫間(庫間) 한채 및 基地 皮牟  
두 말부치기를 200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은 후, 이와 같이 明文을 成給하여  
放賣하므로, 만일 後에 鄉員 중에 雜談하는 일이 있거든 이 文記를 참고하라”  
는 내용이다. 貨幣가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文記 작성 때에 里長·  
洞長·尊位가 입회하였다. ‘東衣’라는 마을 印章(5cm×8.5cm)도 捺印되어  
있다.

#### (4) 相換文記의 例

그러나 하면 서로의 편의를 위해 각자의 토지를 상환하여 경작하려는 相換  
文記도 있다.

乾隆貳拾壹年<干支漏落> 十一月初壹日 金鼎台前相換記

右相換記事段 妻父主前得是在 東衣實東邊月童山員 粟種壹斗伍升付只田庫果  
同人曾祖父主別得是在 州右面牛叱屯里東南邊員 皮牟捌斗付只田庫 從近境 永永  
相換 而本文記段 他田并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日後或有子孫族類中 相爭是  
良置 持此文卞正事

田主 自筆執 姜尚文(手決)

위의 相換記는 乾隆 21년, 즉 英祖 32년(1756) 11월 초 1일에 姜尚文이 金  
鼎台에게 작성해 준 문기이다. 내용은 姜尚文이 妻父로부터 몹으로 받은 東衣  
實東邊 月童山員의 粟種 한 말 닷 되부치기 받을 金鼎台가 曾祖父에게서 別得  
한 濟州牧 右面 牛叱屯里 東南邊員의 皮牟 여덟 말부치기 밭과 상환하는 것인  
데, 상환 동기는 ‘從近境’이라 하여 각자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지경에 있

는 밭으로 바꾸어 경작하고자 한 것이다. 즉 거리가 멀어서 경작이 불편하였기 때문이다.

(5) 和議文記의 例

道光二十九年己酉 十二月十七日 宗孫金聖兼處和記

右和記事段 唯我兩家以一廟之孫 先世掃條文及別給文中 卽有相左之田畝貳庫故自然起鬭 營縣間四五度就卞 將絕族誼之境者 顧念事體 則反極慨嘆 故今此門族俱會之時 別端和議 同所爭田畝 各壹庫式分取是矣 大畝員 租種壹斗捌升付只 則七代祖父主掃條施行 付之宗孫是遺 大堂員 粟種貳斗付只堂田段 高祖父主別給施行 吾矣取執 而若是和同之後 唯我兩家諸孫中 茲前如此如彼之事間 更勿舉論之意 望結金石之誼 彼此成和記 以此憑考事

和記主 金 宗 赫(手決)

仲 父 永 泰(手決)

季 父 永 基(手決)

永 祿(手決)

門 中 金 嗣 喆(手決)

金 應 五(手決)

金 升 寬(手決)

門中筆執 前監牧 金 英 煥(手決)

위의 明文은 道光 29년 己酉 즉, 憲宗 15년(1849) 12월 17일에 和記主 金宗赫이 宗孫 金聖兼에게 작성해 준 和議文記이다. 내용은 “오직 우리 兩家는 一廟의 孫으로 先世의 掃條文記 및 別給文記 중에 서로 어그러 지는 田畝 두 곳이 있으므로, 자연히 소동을 일으켜 營·縣間에 너댓 번 나아가 對辯하여 장차 친족의 友誼를 끊을 지경인데, 事體를 돌아보니, 도리어 극히 개탄스런 일이므로, 이 번에 一家親族이 다 모인 때에 별도의 端緒로 和議하여 그 다루는 田畝를 각각 한 곳씩 나누어 소유하되, 大畝員의 租種 한 말 여덟 되부처기는 7代祖父의 掃祭條<sup>18)</sup>로 처리하여, 이를 宗孫[金聖兼]에게 넘겨주고, 大堂員의 粟種 두 말부처기의 堂田은 高祖父가 別給한 것으로 내[金宗赫]가 소유하도록 하며, 이와 같이 和同한 후 오직 우리 兩家 諸孫 중 전처럼 이러니 저러니 하는 일을 간간이 다시 거론하지 말 뜻으로, 金屬과 같은 友誼로 결속하기를 바라 彼此 和記를 작성하니, 이로써 憑考할 일.”이라 하였다.

18) 祖上 墓所의 벌초와 祭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물려받은 밭.

大番員	租種	1斗8升付只	7代祖父主 掃條	宗 孫
大堂員	粟種	2斗付只堂田	高祖父主 別給	吾矣取執

### Ⅲ. 田畝取得의 經緯

田畝取得의 經緯는 買得 14건, 祖上傳來 10건, 貸得〔衿得〕 5건, 別得 4건, 掃祭條 3건, 家坐 1건, 相換 1건의 順이고, 自作, 貸得〔衿下〕, 傳得 등으로 表記된 文기도 각각 1건씩이며, 文기의 脫落 등으로 分別할 수 없는 文서도 10건이나 되었다. 이하 각 조항에서 그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 (1) 자신이 買得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萬曆肆拾捌年庚申 拾壹月初伍日 金大吉處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同人處 雄馬禾貳□匹乙 貸得用下爲遣 金鳳智處買得起  
 耕爲如乎 地莊泉畝 租種□□付只畝庫乙 金大吉處 永永放賣爲去乎 後此族類中  
 相爭人有去等 此文記內乙用良 告官辨事

財主 洪 悌 源(手決)  
 訂 子 仲 (手決)  
 筆執 同姓 洪 儉 源(手決)

위의 明文은 萬曆 48년<sup>19)</sup> 庚申, 즉 光海君 12년(1620) 11월 초 5일에 財主 洪悌源이 金大吉에게 작성해 준 文記로, 내용은 “緊要하게 쓸 데가 있어서 同人에게 두살배기 雄馬를 貸得하여 用下하고, 金鳳智에게 買得하여 경작하던 地莊泉<sup>20)</sup>에 있는 畝, 租種〔법씨〕 □□ 부치기를 金大吉에게 영원히 방매하므로, 후에 族類 중에 서로 다투는 사람이 있거든 이 文기 내용으로 官에 고하여 바로 잡으라.”는 것이다. 馬匹의 수효와 논의 면적은 脫落되어 알 길이 없다. 證人으로 아들이 口供하였고 同姓 洪儉源이 筆執을 맡았다. 즉 金鳳智에게 買得한 地莊泉에 있는 논〔畝〕을 팔고 있는 것이다.

順治拾陸年己亥 拾月初參日 出身金礪處明文

19) 萬曆 48년은 없으므로 泰昌 元년에 해당한다.

20) 『耽羅誌草本』 旌義縣 山川條에는 「智藏泉 在縣西烘爐下流多瀆田」이라 하였는데, 지금의 西烘洞 석동내 서쪽에 있는 샘으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右明文爲 三生堂員 玄世廻處買得 粟種捌升付只內 東洪應鶴田·南金元弼田·西沙丘·北梁亨助田 四標爲等如分明爲在田庫乙 同人處 永永放賣爲遣 價本段 正木肆疋以折定 地類皮短服壹領 准捧上爲去乎 後次若有雜談人是去等 持此文記而 卞正事

田主 自筆 高門甲(手決)

위의 明文은 順治 16년 己亥, 즉 孝宗 10년(1659) 10월 초 3일에 田主 高門甲이 自筆로 出身 金礪에게 작성해 준 문기로, “三生堂員에 있는 玄世廻에게 買得한 粟種 여덟 되부치기 밭을 同人에게 방매하고, 값은 正木 네 필로 환산하여 地類皮로 만든 短服 한 벌을 계산하여 받았으니, 뒤에 雜談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 文記를 가지고 바로 잡으라.”는 내용이다. 여기서는 玄世廻에게 매득한 三生堂員에 있는 粟種 여덟 되부치기를 팔고 있다.

康熙五十二年癸巳 八月十七日 金主簿前明文

右明文事段 年高九十 亦值大無凶年 資生無路乙仍于 同金主簿前 正粟肆石乙 正木陸疋價折以 准計捧上資生爲遣 價本段 妻亦嫡甥吳迥處 買得爲有在 烘爐古里員望童山北邊 皮牟伍斗付只田·東康男田·西金有得家坐田·南買人田·北趙氏田·四標分明田庫乙 已妻掃墳條以 遣在爲有在乎 同田庫乙 勢不得已 永永報給爲乎矣 本文記段 他田并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若有雜談是去等 持此文內乙 用良 卞正事

田主 老職通政 康 義 獻(手決)

訂人 孫璿 金 完(手決)

筆執 女璿 高 汝 屹(手決)

위의 明文은 康熙 52년 癸巳, 즉 肅宗 39년(1713) 8월 17일에 田主 康義獻이 金主簿에게 작성해 준 문기로, “나이 90이 되고 또 흉년을 당하여 먹고 살 길이 없는 탓으로, 金主簿 앞에 正粟 4석 6두를 正木 여섯 疋 값으로 계산하여 받아서 資生한 후, 값은 妻가 嫡甥吳迥에게 매득한 烘爐古里員 望童山 北邊의 皮牟(겉보리) 5포(동쪽은 康男의 밭, 서쪽은 金有得의 家坐田(집터밭), 남쪽은 買人의 밭, 북쪽은 趙氏의 밭)가 분명한 밭을, 이미 妻의 掃墳條로 남아 있었으나 하는 수 없이 그 밭으로 영원히 값아 주되, 本文記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넘겨 주지 못하므로, 만약 雜談이 있거든 이 문기 내용을 가지고 (官에 알리어) 바로 잡으라.”는 내용이다. 증인으로는 孫璿 金完이, 筆執은 사위 高汝屹이 각각 말았으며, 田主 康義獻은

老職이 通政大夫로 되어 있다. 妻가 吳適에게 매득한 烘爐里 望童山 北邊의 妻 掃墳條인 皮牟 닷 되부치기를 팔고 있다. 金 主簿는 金羽遷을 가리킨다.

乾隆貳拾捌年癸未 柒月初拾日 金鼎台處明文

右明文事段 歎歲家貧之致 勢不得已 外叔母夫姜時豪處買得 所好池員貳庫 合粟種壹斗捌升付 及連牆西邊位田壹庫 粟種五升付 合貳斗參升付 木壹疋半價以 穀物捧用而許賣爲乎矣 四標段 東西北無主之田·南私奴申男田分明爲去乎 後世若有雜談者是去等 持文卞正事

田主 自筆執 梁 重 龍(手決)

위의 明文은 乾隆 28년 癸未, 즉 英祖 39년(1763) 7월 10일에 田主 梁重龍이 自筆로 金鼎台에게 작성해 준 문기로, "흉년에 집이 가난한 소치로 하는 수 없이 外叔母夫 姜時豪에게 매득한 所好池員의 두 곳을 합한 粟種(좁씨) 한 말 여덟 되부치기 및 連牆 西邊의 位田 한 곳의 粟種 닷 되부치기, 합하여 두 말 석 되부치기를 무명 한 필 반 값으로 穀物을 받아 쓰고 許賣하되, 4표는 동·서·북이 주인이 없는 밭이고 남쪽이 私奴 申男의 밭이 분명하므로, 後世에 만약 잡담하는 자가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바로 잡으라."는 내용이다. 外叔母夫에게 매득한 所好池員의 두 筆地, 합계 粟種 한 말 여덟 되부치기와 連牆 西邊의 位田 粟種 닷 되부치기, 總計 두 말 석 되부치기를 팔고 있다. 位田은 結稅나 수확을 일정한 목적에 쓰기 위해 특별히 설정된 밭이며, 한 말은 열 되로 계산되고 있다.

咸豐元年辛亥 十二月二十五日 金聖兼處明文

右明文事段 今此荒歲 萬無資生之道故 右人處 正木穀物 合拾伍疋貳拾伍尺價貸出 後 他無報給之物故 小水西邊豆于木穴員 金相奉處 買得是在 連牆貳庫 合粟種貳斗付 四標段 東賣者田及無主童山·西大川·南賣者田及無主田·北康萬福田 四標分明田庫乙 永爲放賣 而本文段 他田并付故不得許與 日後子孫中 若有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卞正事

田主 金 義 悅(喪不着)

筆執 吳 繼 周(手決)

위의 明文은 咸豐 원년 辛亥, 즉 哲宗 2년(1851) 12월 25일에 田主 金義悅이 金聖兼에게 작성해 준 문기로, 내용은 "이번에 흉년으로 전혀 먹고 살 길이 없기에, 위의 사람[金聖兼]에게 正木과 穀物을 합하여 닷 필 25尺을 貸出한 후, 달리 값아 줄 물건이 없으므로, 小水西邊의 豆于木穴員 金相奉에게 매

특한 連墻의 두 곳을 합하여 粟種 두 말부치기로 4표(4표는 동쪽이 賣者의 밭과 주인이 없는 童山이고 서쪽이 大川, 남쪽이 賣者의 밭과 주인이 없는 밭, 북쪽이 康萬福의 밭)가 분명한 밭을 영원히 방매하고, 本文記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넘겨 주지 못하니, 日後에 만약 잡담하는 폐해가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官에 告하여 바로 잡으라.”는 것이다. 田主는 喪中이므로 署名을 앓고 있으며 筆執은 吳繼周가 담당하였다. 여기서는 金相奉에게 매득한 連墻에 있는 두 筆地, 합하여 粟種 두 말부치기를 팔고 있다.

## (2) 祖上傳來의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康熙玖年庚戌 玖月貳拾參日 前僉使金礪前明文

右明文事段 島中凶年慘酷 千古所無 資生爲難乙仍于 祖上流來西唐員 皮牟參石付只田庫 四標段 (東)金善元田及洪計田·西高起一田及金元得田·南姜吉男田及高召吏田·北姜海敏田 四標爲等如分明爲在田庫乙 同人前放賣爲遺 價本段 正木肆拾疋折定 粟捌石准捧 永永放賣爲去乎 後此(次)良中 如有同生子息中 雜談爭望者是去等 持此明文內乙用良 告官卞正事

田主 李汝立(左手寸)

證 高元福(手 決)

證 金善元(手 決)

筆執 鎮撫 金良得(手 決)

위의 明文은 康熙 9년 庚戌, 즉 顯宗 11년(1670) 9월 23일에 田主 李汝立이 前 僉使 金礪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島中에 흉년이 참혹하여 千古에 없었던 바, 먹고 살아가기 어려운 탓으로 祖上傳來의 西唐員에 있는 皮牟 석 섬부치기 밭을 同人에게 방매하고, 값은 正木 40필로 환산하여 粟(조) 여덟 섬을 계산해 받는다.”는 내용이다. 西唐員에 있는 祖上流來(傳來)의 밭을 방매하고 있으며, 筆執은 鎮撫 金良得이 담당하였다.

〈康熙拾年〉辛亥 貳月貳拾日 前僉使金礪前明文

右明文事段 值此大無之年 資生爲難乙仍于 祖上傳來耕食爲如乎 都猪田員 粟壹斗付只田 四標段 東良女義德田·西高永弼田·南小路及買者田·北良女義德田 四標爲等如分明爲在田庫 價本段 木棉拾貳疋折定 粟貳石准計捧上爲遺 同人前 永永放賣爲去乎 後此(次)同生族枝中 若有雜談隔是去等 持此文記告官辨正事

田主 武學 夫興弼(手決)

證人 高榮律(手決)

證保 李 植

筆執 高就斗(手決)

위의 明文은 康熙 10년 辛亥, 즉 顯宗 12년(1671) 2월 20일에 田主 武學 夫 興弼이 前 僉使 金礪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흉년을 당하여 먹고 살아가기 어려운 탓으로, 祖上傳來로 갈아먹던 都猪田員에 있는 粟 한 말부치기 밭을 木棉 20필로 환산하여 粟 두 섬을 계산해 받고 同人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祖上傳來로 갈아먹던 都猪田員에 있는 밭을 賣渡하고 있는 것이다. 證保 李植의 手決은 없다('康熙 10년'은 筆者가 添加한 것임).

康熙參拾陸年丁丑 拾月初陸日 金興德宅首奴禾來同處明文

右明文事段 值此凶年 生利爲難乙仍于 祖上傳來 里以南邊員代田 米牟貳升付只田 庫 東同生弟高雲敬田·西北高仁吉家坐田·南買者田及縣地尅个員 粟貳升付只 東 小路·西洪流漢田·南童山·北洪流漢田 四標爲等如分明爲在田庫 價本段 粟伍石 准計捧上爲遺 同宅永永放賣爲去乎 後此[次]良中 同生子孫中雜談爲去等 持此文告 官卞正事

田主 甲士 高春敬(手決)  
證人 洪繼望(手決)  
證保 高世安(手決)  
筆執 書員 河 湜(手決)

위의 明文은 康熙 36년 丁丑, 즉 肅宗 23년(1697) 10월 초 6일에 田主 甲士 高春敬이 金興德宅의 首奴 禾來同에게 작성해 준 문기로, "흉년을 당하여 살아가기 어려운 탓으로, 祖上傳來의 마을 南邊員의 代[笠]田 米牟[쌀보리] 두 되부치기(동쪽이 同生弟의 밭, 서북쪽이 高仁吉의 家坐田, 남쪽이 買者의 밭) 및 縣地尅个員의 粟[조] 두 되부치기(동쪽이 소로, 서북쪽이 洪流漢의 밭, 남쪽이 동산)로 4표가 분명한 밭들이며, 값은 粟 닷 섬을 계산하여 받고 同宅에 영원히 방매하므로 후에 동생 자손 중에 잡담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官에 告하여 바로 잡으라."는 내용이다. 마을 남쪽에 있는 조상 전래의 밭을 방매하고 있으며, 筆執은 書員 河湜이 담당하였다.

康熙伍拾貳年癸巳 貳月初伍日 金主簿宅首奴泉信處明文

右明文事段 值此大殺之歲以 資生無路乙仍于 勢不得已 祖上傳來 耕食爲如乎 水 望里內員 皮牟參斗付只田 四標段 東高鄴田·西高雄必田·北小路·南康得安田 爲 等如四標分明田庫乙 同泉申處 永永放賣爲遺 價本段 正粟壹石伍斗 准計捧上爲去 乎 日後族屬中 爭望者是去等 持此文告官卞正事

田主 金時會(左手寸)  
 證人 寺奴 孟 金  
 證保 寺奴 卜 金  
 筆執 鎮撫 康穎達(手 決)

위의 明文은 康熙 52년 癸巳, 즉 肅宗 39년(1713) 2월 초 5일에 田主 金時會가 金 主簿宅 首奴 信에게 작성해 준 문기로, "흉년을 당하여 먹고 살 길이 없는 탓으로 하는 수 없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며 갈아먹던 水望里內員 皮牟 석 되부치기로 4표(4표는 동쪽이 高○의 밭, 서쪽이 高雄必의 밭, 북쪽이 소로, 남쪽이 康得安의 밭)가 모두 분명한 밭을 同泉申(信의 誤?)에게 영원히 방매하고, 값은 正粟 한 섬 닷 되를 계산하여 받았으므로, 日後에 族屬 중에 다투어 원망하는 자가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官에 告하여 바로 잡으라."는 내용이다. 조상전래로 갈아먹던 水望里 內員(거리왓)의 皮牟 석 되부치기를 팔고 있다.

乾隆二十九年甲申 □□□□□□□□□□

右明文事段 矣身大無荒年 多〈數受食還上爲〉乎如可 不得官納乙仍于 同人前 □□□〈貸出官納〉後 價本段 他無報給乙仍于 矣家坐北邊 〈祖上〉流來田 麻子貳斗付只田 四標段 東〈私奴〉金男上典田·西門路及私奴卜出上典田·南賣子〈田〉及家坐·北金弼伍田 四標分明田庫乙 同人前 永〈永〉報給爲乎矣 本文段 他田并付故 不得許給〈爲去〉乎 此後子孫中 雜談者是去等 持此文告官〈卜正〉事

田主 自筆 金鎮宅(手決)

위의 明文은 乾隆 29년 甲申, 즉 英祖 40년(1764)에 田主 金鎮宅이 自筆로 작성했던 토지 賣渡文書이다. 탈락이 심하여 買主가 金氏家の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다. "이몸이 흉년에 많은 量의 還上(吏讀, 音은 환자)를 받아 먹고 官에 返納할 수가 없어서, (同人에게 빌려서 값은 후), 그 값을 달리 값아 줄 수가 없기에 나의 집터 북변의 조상 流來田 麻子[삼씨] 두 말부치기 밭으로 값아 주되, 本文記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조상전래의 麻子[삼씨] 두 말부치기 밭을 팔고 있다 (< > 안은 筆者가 복원해 본 것임).

### (3) 傳得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傳得은 相續 또는 遺贈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祖上流來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康熙參拾柒年戊寅 柒月初壹日 金興德首奴禾來同處明文  
 右明文事段 連值慘兇 生理爲難乙仍于 勢迫不已 父前傳得 伊愁於員 粟種陸升付  
 只 四標段 東及南買者田·西小路·北金繼結田 四標爲等如分明爲在田庫乙 價  
 本段 價布伍疋折定 粟貳拾伍斗准計擗上爲遺 同田庫乙同宅〈前〉 永永放賣爲去乎  
 後日良中 同生子孫中 如有爭望者是去等 持此文告官卜正事

田主 宋承興(左手寸)  
 訂人 高潤(手決)  
 訂保 高興隆(手決)  
 筆執 金貴蘊(手決)

위 明文은 康熙 37년 戊寅, 즉 肅宗 24년(1698) 7월 초 1일에 田主 宋承興  
 이 金興德의 首奴 禾來同에게 작성해 준 문기로, "연이은 참혹한 흉년으로 살  
 아나가기 어려운 탓으로, 父親으로부터 傳得(相續)한 伊愁於員의 粟種 몇 되  
 부치기를 價布 다섯 필로 환산하여 粟 스무 닛 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  
 하여 받고 同宅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同治九年庚午 正月初十日 金聖兼處明文  
 右明文事段 矣當此殺年 生道無路故 右人處 正木肆貳什尺貸用後 價報(本)段  
 他無邊(變)通故 矣衿下田 所謂西義實里內 甘上伊田員 皮牟柒升付 四標段 東北  
 小路·南玄啓坤及都元春田·西童山 標分明田庫 永爲報給是矣 本文記段置 玆以  
 許給爲去乎 後若有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卜正事

田主 自筆 鄭師儒(手決)

위의 明文은 同治 9년 庚午, 즉 高宗 7년(1870) 정월 초 10일에 田主 鄭師  
 儒가 自筆로 金聖兼에게 작성해준 문기로, "흉년을 당하여 살아나갈 길이 없  
 기에 金聖兼에게 正木 네 필 20척을 貸用한 후, 달리 변통할 수가 없으므로  
 나의 깃하전(衿下田) 이른바 西義實里 내의 甘上伊田員 皮牟 일곱 되부치기로  
 영원히 갚아주되, 本文記도 넘겨준다."는 내용이다. 여기서는 막연히 깃하  
 전, 즉 몹으로 받은 밭이라고만 하였다.

#### (4) 깃득[衿得]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깃득[衿得]은 吏讀式 表記의 하나로 祖上으로부터 遺産의 몹을 받은 밭을  
 말한다. 이 경우 형제자매의 分給 내용을 同一 문서에 표시하지 않고 자녀 한  
 사람씩 衿[ 몹]을 別書해 준다. 그러나 그 別書의 내용을 여기서는 알 수가 없

다.

順治拾肆年戊戌 參月拾□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妻母前 衿得耕食爲如乎 都猪員 粟種壹斗付只 四標段 東小路·南旨林·西磊林·北梁亨勛田 及里內南邊員 奴所<sup>1)</sup>同處買得田 米牟壹斗付只 四標段 東金自好田·南金德廻田·西旨·北高元福代<sup>2)</sup>庫乙 春耕迫急之時 無農牛乙仍于 勢不得已 實常布<sup>3)</sup>□拾疋價以計之 八禾農牛壹首乙 捧上爲遣 同四標分明田庫乙 同人前 永永放賣爲去乎 後日吾矣同生子孫中 爭望雜談有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辨正事

訂 兼司僕 夫守一(手決)  
保 定虜衛 金元弼(手決)  
田主 自筆 校 生 金挺西(手決)

위의 明文은 順治 14년 戊戌,<sup>21)</sup> 즉 孝宗 8년(1657) 3월에 田主 金挺西가 自筆로 金氏家에 작성해 주었던 문기로, “긴요하게 쓸 데가 있어 妻母 앞에 妻 몫으로 받아 갈아먹던 都猪員 粟種 한 말부치기 및 마을 안 남변의 奴 所<sup>○</sup>同에게 매득한 밭 米牟 한 말부치기 등 두 곳을 春耕이 急迫할 때 農牛가 없는 탓으로, 하는 수 없이 實常布 몇 십 필 값으로 계산하여 여덟살배기 농우 한 마리를 받고, 동 4표가 분명한 밭을 同人 앞에 영원히 방매하므로, 後日에 나의 同生子孫 중 다루어 원망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官에 고하여 바로 잡으라.”는 내용이다. 여기서는 妻母로부터 妻 몫으로 물려받은 밭을 賣渡하고 있다. 문기 작성시의 立會人으로는 兼司僕 夫守一과 定虜衛 金元弼이 참가하였다.

順治拾柒年庚子 柒月初伍日 出身金礪處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妻父前衿得爲有在 烘爐面地壯泉員 好音畜 租種肆斗付只 畜庫乙 同金礪亦中 永永放賣爲遣 價本段 騎馬壹匹捧上爲去乎 後次同生子孫中 爭望者有去等 持此文內乙用良 告官辨正爲乎事

畜主 自筆 金以海(手決)

위의 明文은 順治 17년 庚子, 즉 顯宗 원년(1660) 7월 초 5일에 畜主 金以海가 自筆로 出身 金礪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要用所致로 妻父에게서 妻 몫으로 받은 烘爐面 地壯泉員의 好音畜 租種 肆 되부치기를 金礪에게 영원히 방

21) 順治 14년의 干支는 丁酉이고 戊戌은 15년이므로 어느 하나가 착오이다.

매하고, 값으로 騎馬 한 필을 받았으니, 同生子孫 중에 다투어 원망하는 자가 있거든 이 文記를 가지고 官에 고하여 바로 잡으라.”는 내용이다. 여기서는 妻父로부터 妻 몫으로 받은 논을 처분하고 있다.

康熙陸年丁未 參月拾伍日 金礪前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父前衿得耕食爲如乎 敦野里內員 米牟貳斗付只田 四標段 東高敬屹田·西兄宋彦男田·南高榮弼田·北金以海田 四標爲如乎(爲等如?) 分明爲在田庫乙 同人前放賣爲遺 價本段 正木陸疋准計捧上後 放賣爲去乎 後次 同生子息等中 雜談偶有去等 證俱文記內乙用良 告官辨正爲乎事

田主 宋彦合(手 決)

證人 梁山男(左手寸)

證人 金先亢(手 決)

筆執 高山祿(手 決)

위의 明文은 康熙 6년 丁未, 즉 顯宗 8년(1667) 3월 15일에 田主 宋彦合이 金礪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내용은 “要用所致로 아버지로부터 몫으로 받아 경작하던 敦野里 內員의 米牟 두 되부치기 밭을 同人에게 방매하고 값은 正木 여섯 필을 계산하여 받는다.”는 것이다. 父親으로부터 몫으로 받은 밭을 방매하고 있다.

康熙貳拾伍年丙寅 十二月初伍日 前縣監金礪處明文

右明文事段 值此兇荒 要用所致以 妻邊衿得田 汝古木旨員 粟種壹斗付只 及妻甥高汝綱處買得 粟種參升付只田 合壹斗參升付只田庫 四標段 東買者田·西洪之淵田·南無主陳荒田·北故金忠一田 四標爲等如分明爲在田庫 價本段 甲布參疋以折定後 粟壹石甲布壹疋准計捧上後 同田庫乙 永永放賣爲去乎 後次子孫中 爭望者有去等 持此文記告官辨正事

田主 前 座首 金 崑(手決)

筆執 哨官 文尚徵(手決)

위의 明文은 康熙 25년 丙寅, 즉 肅宗 12년(1686) 12월 초 5일에 田主 前座首 金崑이 前縣監 金礪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흉년을 당하여 要用所致로 妻家에서 妻 몫으로 받은 汝古木旨員의 粟種 한 되부치기 및 妻男 高汝綱에게 매득한 粟種 석 되부치기, 합계 한 말 석 되부치기 밭을 甲布 세 필로 환산한 후 粟 한 섬, 甲布 한 필을 계산하여 받은 후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

이다. 妻家에서 妻 몫으로 받은 밭을 방매하고 있다. 筆執은 哨官 文尚徵이 담당하였다.

康熙參拾捌年戊寅 正月貳拾日 金興德宅首奴禾來同處明文  
右明文事段 連值兇荒資生爲難 伊愁浦員 妻邊衿得田 皮牟柒斗付只田庫 四標段  
東洪德先田·南買者田·西宋承興田·北買者田 四標爲等如分明爲在田庫 價本段  
粟貳石拾斗准計捧上爲遣 同田庫乙 永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子孫中 有雜談者是  
去等 持次〔此〕文記告官辨正事  
田主 自筆 高泰吉(手決)

위의 明文은 康熙 38년 戊寅,<sup>22)</sup> 즉 肅宗 25년(1699) 정월 20일에 田主 高泰吉이 自筆로 金興德宅의 首奴 禾來同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연이은 흉년을 당하여 살아 나가기가 어려워 妻家에서 妻 몫으로 받은 伊愁浦員의 皮牟〔겉보리〕 일곱 말부치기 밭을 粟 두 섬 열 말로 계산하여 받고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이 文記 역시 妻家에서 妻 몫으로 받은 밭을 방매하고 있다.

乾隆貳拾壹年〈干支漏落〉 十一月初壹日 金鼎台前相換記  
右相換記事段 妻父主前衿得是在 東依貴東邊月童山員 粟種壹斗伍升付只田庫果  
同人曾祖父主別得是在 州右面牛叱屯里東南邊員 皮牟捌斗付只田庫 從近境永永  
相換 而本文記段 他田并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日後或有子孫族類中 相爭是  
良置 持此文卞正事  
田主 自筆執 姜尚文(手決)

위의 文記는 乾隆 21년, 즉 英祖 32년(1756) 11월 초 1일에 姜尚文이 金鼎台前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내용은 姜尚文이 妻父에게서 몫으로 받은 東依貴東邊 月童山員의 粟種 한 말 닷 되부치기 밭을 金鼎台가 曾祖父에게서 別得한 濟州牧 右面 牛叱屯里 東南邊員의 皮牟 여덟 말부치기 밭과 相換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衿得과 別得의 두 가지 예를 볼 수 있다.

### (5) 別得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別得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조상으로부터 田畓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 사유는 科擧及第·生日·婚禮·病治療·得男 등, 기념하거나 축하할 만한 일이 있을 때, 혹은 빈곤하여, 情이 들어서 또는 感謝한 것을 표시하기 위해 행

22) 康熙 38년은 己卯이고 戊寅은 37년이므로 하나가 착오이다.

하여진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는 문기는 賣買文書이기 때문에 別得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康熙貳拾伍年丙寅 拾□□月貳拾□□日 金興德宅首奴禾來同處明文  
右明文事段 值此兇荒 存命勢難乙仍于 妻邊別得耕食爲在 腮木田員 粟種伍升落只  
田庫 四標段 東買者田及姜吉男田·南同山·西大路·北金繼繼田及買者田 四標  
爲等如分明爲在田庫 價本段 正木拾貳疋價以折〈定〉 粟穀陸石伍斗准捧後 同宅亦  
中 永永放賣〈爲去乎〉 吾矣子息族枝中 若有雜談爭望者是去等 持此明文告官卞正  
事

田主 鎮撫 高致星(手決)  
證 出身 高元進(手決)  
證 假率 洪繼望(手決)  
筆執 鎮撫 金亮得(手決)

위의 明文은 康熙 25년 丙寅, 즉 肅宗 12년(1686)에〔月日은 未詳〕田主 鎮撫 高致星이 金興德宅의 首奴 禾來同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내용은 “흉년을 당하여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므로, 妻家에서 別得하여 경작하던 腮木田員의 粟種 5되지기 밭을 正木 열두 필로 환산하여 粟穀 6석 5되를 계산하여 받은 후, 同宅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別得의 사유는 文記上에 언급이 없으므로 알 길이 없다.

〈康熙參拾柒〉年戊寅 陸月貳拾日 金興德宅首奴禾來同處明文  
〈右明文〉事段 連值兇荒 資生爲難乙仍于 勢不得已 妻邊別得耕食爲如乎 獨子員  
粟壹斗伍升付只田庫 四標段 東買者田·西夫敬敏田·南金潤兩田·北洪夢良田  
價本段 價布伍疋以折定 粟貳石肆斗 准計捧上爲遣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良中 同生子孫中 雜談爲去等 持此文內乙用良 告官卞正爲乎事

田主 洪武申(手決)  
證人 高興隆(手決)  
證保 高潤(手決)  
筆執 書員 河湜(手決)

위의 明文은 康熙 37년 戊寅, 즉 肅宗 24년(1698) 6월 20일에 田主 洪武申이 金興德宅의 首奴 禾來同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내용은 “연이은 흉년을 당하여 먹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탓으로, 하는 수 없이 妻家에서 別得하여 경작하던 獨子員 粟 한 말 5되부치기 밭을 價布 다섯 필로 환산하여 粟 두 섬을 계산하여 받고 同人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康熙伍拾貳年癸巳 十一月二十三日 異姓四寸兄金羽遷前明文

右明文事段 值此荒年 要用所致以 父主前別得田庫 在於狐村面衣貴大堂員 所謂夜又田 皮牟貳石付只 四標段 東西買者田·南金羽京田·北金長遠田 四標分明田 乙 價本段 正粟拾石準計捧上爲遣 同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子孫中 如有雜談者是去等 持此文告官卞正事

自筆 田主 金喜雨(手決)

위의 明文은 康熙 52년 癸巳, 즉 肅宗 39년(1713) 11월 23일에 田主 金喜雨가 自筆로 異姓四寸兄 金羽遷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내용은 "흉년을 당하여 要用所致로 父親으로부터 別得한 狐村面 衣貴大堂員에 있는 이른바 夜又田 皮牟 두 섬부치기 밭을 正粟 열 섬으로 계산하여 받고 同人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이다. 父親으로부터 別得한 밭을 방매하고 있으나 이 역시 別得의 내용은 알 수 없다. 異姓은 同本이 아님을 뜻하는 말이다.

#### (6) 相換했던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康熙拾壹年壬子 玖月初陸日 前僉使金礪前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妻同生果相換爲在田庫 芻橋來員 粟肆升落只田 四標段 東高承先田·西金景五田·南買者田·北買者田 四標爲等如分明爲在田庫 同人前放賣爲遣 價本段 正木參疋準計捧上後 永永放賣爲去乎 後此〔次〕良中 族枝雜談爲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辨正事

田主 自筆 告就斗(手決)

위의 明文은 康熙 11년 壬子, 즉 顯宗 13년(1672) 9월 초 6일에 田主 高就斗가 自筆로 前 僉使 金礪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내용은 "要用所致로 妻 同生과 相換한 芻橋來員의 粟 너 되지기 밭을 同人에게 방매하고, 값은 正木 세 필로 환산하여 받았으니, 후에 事端이 생기거든 이 文記를 가지고 官에 고하여 바로 잡으라."는 것이다. 妻 同生과 相換했던 밭을 방매하고 있다.

#### (7) 掃祭條를 처분하는 경우

康熙伍拾貳年癸巳 九月二十五日 金主簿前明文

右明文事段 不意今者 值此大無之年 許多家率不足可論奉親之下 資生誠難<乙仍于> 勢不得 粟八石乙 正木拾參<疋>價以折定 準計捧上爲遣 價本段 掃祭條是在 烘爐桶水員 租種壹斗陸升付<只 四標段> 東金根燦田及畚·西南水洞及小路 四標分明畚庫 本文記并 永永放賣爲去乎 同生及子孫中 後此〔次〕良中 如有雜談是去

等 持此文告官下正事

畚主 自筆執 前 把摠 梁汝楹(手決)

위의 明文은 康熙 52년 癸巳, 즉 肅宗 39년(1713) 9월 25일에 畚主 前 把摠 梁汝楹이 自筆로 金 主簿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내용은 “뜻밖에 지금의 大無之年(흉년)을 만나 많은 家率이 어버이를 奉養하기에 충분하지 못하여 먹고 살기가 참으로 어려운 탓으로, 하는 수 없이 粟 여덟 섬을 正木 열세 필 값으로 환산하여 받고, 값은 掃祭條인 烘爐桶水員의 租種 한 말 엿 되부치기를 本文記와 아울러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不意의 흉년을 당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탓으로 掃祭條를 방매하고 있으나 掃祭條의 當事者가 누구인지는 文記上에 언급이 없다.

#### IV. 田畚放賣의 事由

田畚文記 總 51件에 나타난 放賣의 事由는 凶年과 貧寒(重病救食 포함) 24건, 要用所致 11건, 同色馬와 貢馬 2건, 免講과 免取才 2건, 還上米의 備納 2건, 造家 1건, 作畚 1건, 罷養 1건, 기타 4건 등이었고, 相換文記도 4건이나 되었다.

##### (1) 凶年과 貧寒

凶年은 주로 ‘大無之年’ 따위로 표현되고 있다. 당시에 있어 가장 두려운 존재는 흉년이었으며, 貧寒 역시 당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土質이 척박한 데다가 開墾마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외에도 重病으로 인해 救食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例示해 보면 다음과 같다.

- A) 島中凶年慘酷 千古所無 資生爲難
- B) 值此大無之年 資生爲難
- C) 值此大無之年 數多食口資生爲難
- D) 值此兇荒大無之年
- E) 存養勢難
- F) 值此凶年 他無資生之路

- G) 生利爲難
- H) 連值兇荒 資生爲難
- I) 慘兇生理爲難
- J) 連值大殺之歲 資生無路
- K) 年高九十亦值大無凶年 資生無路
- L) 不意今者 值此大無之年 許多家率不足可論奉親之下 資生誠難
- M) 本人貧寒之人 既至衰年 生理無路之中
- N) 矣身本以貧寒之人 值此殺年 生涯爲難
- O) 歎歲家貧之致
- P) 今此荒歲 萬無資生之道
- Q) 矣當此殺年 生道無路
- R) 運數不幸 身得重病 已至周年之中 諸處求食許多 而窮家難報其償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島中の 흉년이 참혹하여 千古에 없는 바 資生이 어려움으로,
- (2) 兇荒의 大無之年을 만나 數多한 식구의 자생이 어려움으로,
- (3) 存養이 어려운 형세이므로,
- (4) 흉년을 만나 要用所致로,
- (5) 달리 자생활 길이 없으므로,
- (6) 生利가 어려움으로,
- (7) 연이어 흉년을 만나 자생이 어려움으로,
- (8) 연이어 참혹한 흉년에 生理가 어려움으로,
- (9) 나이 90세에 흉년을 만나 자생이 어려움으로,
- (10) 뜻밖에 大無之年을 만나 허다한 家率이 奉親을 논할 수 없고 자생이 진실로 어려움으로,
- (11) 빈한한 몸인 데다가 衰年에 이르러 생리가 無路하므로,
- (12) 흉년에 집이 가난한 소치로,
- (13) 殺年을 만나 生道가 無路하므로,
- (14) 운수가 불행하여 重病에 걸린지 이미 周年이 되어 諸處에 허다한 求食을 집이 가난하여 그 빛을 감기 어려움으로,

즉 흉년을 大無之年, 兇荒大無之年, 連值兇荒, 連值大殺之歲, 今此荒歲, 當此殺年 등으로 표기하고, 생활은 資生·生利 혹은 生理·生道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 凶年の 경우

康熙拾年辛亥 貳月初貳日 前僉使金礪前明文

右明文事段 值此大無之年 資生爲難乙仍于 烘爐地藏畚北邊員 租種壹斗落只 拾肆夜味畚庫 四標段 東北加時頭旨 西買者畚 南洪卜孫畚 四標分明爲在畚 價折段 木棉柒疋折以 粟貳拾斗准計捧上後 同拾肆夜味畚庫乙 同人前 永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 某人是乃 若有雜談人是去乙等 持此文告官卞正爲乎事

畚主 良女 金 生(右手寸)  
訂人 玄德文(手 決)  
訂人 奴 西 斤(左手寸)  
筆執 骨 活(手 決)

위의 明文은 康熙 10년 辛亥, 즉 顯宗 12년(1671) 2월 초 2일에 畚主 良女 金生이 前 僉使 金礪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내용은 “흉년을 당하여 먹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탓으로, 烘爐 地藏畚 北邊員의 租種 한 말지기 14夜味(배미 : 筆地)를 木棉(무명) 일곱 필로 환산하여 粟 스무 말(한 섬 닛 되)을 받은 후, 同人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이다. 방매의 사유는 흉년이다.

康熙拾年辛亥 貳月初貳日 前僉使金礪前明文

右明文事段 值此凶年大無之年 資生爲難乙仍于 烘爐地藏畚東邊員 租種伍升落只 貳夜味畚庫乙 四標段 東肖古□□畚及官畚·西南官畚·北買者畚 四標爲等如分明畚庫乙 價本段 正木伍疋折以 粟壹石准計捧上爲違 同畚庫 同人前 永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 某族類中 若有雜談人是去乙等 持此文告官卞正爲乎事

畚主 良女 古 生(右手寸)  
訂人 玄德文(手 決)  
訂人 奴 西 斤(右手寸)  
筆執 骨 活(手 決)

위의 明文은 康熙 10년 辛亥, 즉 顯宗 12년(1671) 2월 초 2일에 畚主 良女 古生이 前 僉使 金礪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흉년을 당하여 먹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탓으로, 烘爐 地藏畚 東邊員의 租種 닛 되지기 두 夜味(筆地)를 正木 다섯 필로 환산하여 粟 한 섬을 받고 同人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이

다. 이 文記도 앞의 明文과 같이 흉년을 당하여 논을 방매하는 것으로, 같은 날자에 동일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을 반영하듯 訂人이나 筆執이 같다.

康熙貳拾伍年丙寅 拾壹月初伍日 前縣監金礪前明文

右明文事段 值此大無之年 數多食口資生爲難乙仍于 甲布玖疋價以折定 粟肆石貸食爲遣 他無報給之物乙仍于 獨子員 祖上流來爲有在田 粟種壹斗伍升付只 東買者田及林·西高□□田·南買者田·北金戒重田 四標爲等如分明正田庫乙 同人前永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 族枝中有爭望者是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卞正事

田主 司僕 金尚錡(手決)

證人 出身 高元進(手決)

證保 假率 高汝隆(手決)

筆執 文 鎰(手決)

위의 明文은 康熙 25년 丙寅, 즉 肅宗 12년(1686) 11월 초 5일에 田主 司僕 金尚錡가 前 縣監 金礪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흉년을 당하여 많은 식구가 먹고 살아가기 어려운 탓으로, 甲布 아홉 필 값으로 환산하여 粟 4석 5升을 빌려먹고 달리 갚아줄 물건이 없기에 獨子員에 있는 祖上傳來의 粟種 한 말 닷 되부치기를 同人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내용 중 甲布는 價布의 誤인지 아니면 품질이 좋은 베인지 미상이다.

康熙貳拾伍年丙寅 拾壹月初伍日 前縣監金礪前明文

右明文事段 值此兇荒大無之年 數多食口資生爲難乙仍于 長德巨里員 同生妹前買得耕食爲有在 米牟參斗落只田 東大路及買者田·西高丁敏田·南買者田 北金弘龍田 四標爲等如分明田庫 價本段 粟貳石上價布壹疋 准計擡上爲遣 同人前 同田庫乙 永永放賣爲去乎 後次子孫中 雜談隔有去等 持此明文內乙用良 告官辨正事

田主 自筆執 洪應鶴(手決)

위의 明文은 康熙 25년 丙寅, 즉 肅宗 12년(1686) 11월 초 5일에 田主 洪應鶴이 自筆로 前 縣監 金礪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흉년을 당하여 많은 식구가 먹고 살아가기 어려운 탓으로, 동생 妹에게 매득하여 경작하던 長德巨里員의 米牟 세 말지기를 粟 두 석과 上價布 한 필로 값을 정하여 계산하여 받고 同人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앞의 文記와 같은 날자에 매매가 이루어졌다.

\* 貧寒의 경우

乾隆拾陸年辛未 柒月□□日 金鎮基前明文

右明文事段 本人貧寒之人 既至衰年 生理無路之中 上年夏間石穀垂惠 生活至恩 同人前無報惠乙仍于 舊里員 牟種陸斗落只田庫 四標段 東南西買人田·北高漢雄 田 四標分明田庫乙 同人前永永報恩爲乎矣 本文(記)段 他田地并付故 不得許與 爲去乎 日後若有族屬他人中 爭望者是去等 持此文記告官卞正事

田主 門人 金時獻(手決)

筆執 金南星(手決)

위의 明文은 乾隆 16년 辛未, 즉 英祖 27년(1751) 7월에 田主 門人 金時獻 이 金鎮基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내용은 “本人은 가난한 사람으로 이미 衰年 에 이르러 살아나갈 길이 없는 탓으로, 지난해 여름에 섬이나 되는 곡식으로 惠澤을 받아 생활이 지극히 은혜로웠으나 同人에게 은혜를 갚지 못하였기에, 舊里員에 있는 牟種(겉보리씨) 옛 말지기 밭으로 동인에게 영원히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다. 本文記는 讓渡하지 않고 있다.

乾隆二十三年丁丑 二月二十七日 高漢英處明文

右明文事段 矣身本以貧寒之人 值此殺年 生涯爲難乙仍于 同人處 正木三十尺貸 用資生 而他無報給之物 故矣二禾雄馬一匹 放賣於牧子奴可外處 而妻父名字捧明 文爲有在 金石磊北邊員 粟捌升落只田 四標段 東北金南標田·西南金元夏田 四 標分明田庫 同人處 永永放賣爲乎矣 本文段他田并付故 不得許與爲去乎 日後若 有爭望 持此文記 告官卞正事

田主 高世歡(手決)

筆執 金南星(手決)

위 明文은 乾隆 23년 丁丑<sup>23)</sup>, 즉 英祖 34년(1758) 2월 27일에 田主 高世歡 이 高漢英에게 작성해 준 文記이다. 내용은 “이 몸은 원래 貧寒한 사람인데 흉년을 당하여 생활이 어려운 탓으로 同人에게 正木 30尺을 貸用하여 資生하고 달리 報給할 물건이 없으므로, 두살배기 雄馬 한 필을 牧子 奴 可外에게 放賣하고 妻父名字로 明文을 받았던 金石磊北邊員 粟 여덟 되지기 밭(4표 생략)을 同人에게 영원히 방매하되, 本文記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넘겨주지(許與) 못한다.”고 하였다.

\* 重病救食의 경우

23) 丁丑은 乾隆 22년의 干支.

〈康熙參拾〉玖年庚辰 柒月拾壹日 主簿金羽遷處明文

右明文事段 運數不幸 身得重病 已至周年之中 諸處求食□□許多 而窮家難報其價 迫於不得已 祖上傳來耕食爲在 邊萬殊田員 皮牟壹石伍斗付只田 四標段 東大堂基及金喜兩田·南金福田·西小路及水溪·北賣者田 爲等如四標分明田庫乙 價本段 雜穀肆石准計捧上爲遣 同金羽遷亦中 永永放賣爲去乎 若有日後遠近族類及子孫中 爭望者是去等 持此文告官卞正事

田主 前 別監 金致玉(手 決)

訂人 俞戒武(左手寸)

筆執 金得宗(手 決)

위의 明文은 康熙 39년 庚辰, 즉 肅宗 26년(1700) 7월 11일에 田主 前 別監 金致玉이 主簿 金羽遷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내용은 “계속되는 不幸에다 몸이 重病을 앓은지 이미 周年에 이르는 가운데, 여러 곳에서 求食한 것이 많으나 집이 가난하여 그 빚을 갚기 어려워, 하는 수 없이 조상전래로 경작하던 邊萬殊員의 皮牟 한 섬 닷 되부치기 밭을 雜穀 넉 섬으로 계산하여 받고 金羽遷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이다.

(2) 要用所致

要用所致는 방매의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용어이다. 그러나 本稿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전답문기의 경우, 대부분이 이미 買受者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貸得(貸用·貸出)하여 用下한 후, 그 값을 갚기 위해 방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이미 빌려 쓴 물건 값으로 토지를 引導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 矣身急有用處故
- B) 要用所致以 同人處 雄馬禾貳□匹乙 貸得用下爲遣
- C) 要用所致以 同人前 牛皮壹張貸用爲遣
- D) 要用所致以 春耕迫急之時 無農牛乙仍于
- E) 要用所致以 價本段 騎馬壹匹捧上爲如乎
- F) 要用所致以 價本段 正木陸疋准計捧上後
- G) 要用所致以 價本段 肆禾黑雄牛壹首 准計捧上爲遣
- H) 要用所致以 同人處 今生雌馬壹匹 貸得用下爲遣
- I) 要用所致 正木參疋貸用後 價本段 他無報給故

J) 卽有要用之事 故同人處 正木壹疋貸出用下後 價本段 他無報給乙仍于

위 내용에서 보면, 要用所致로 빌려 쓴 對象物은 雄馬·牛皮·騎馬·正木·黑雄牛·今生雌馬 등인데, 이들 중에는 農牛를 마련하려고 밭을 파는 경우도 있다. 그 예를 田畚文記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崇禎伍年壬申 參月拾壹日 出身金大吉前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同人前 牛皮壹張貸用爲遣 價本段 伐浦員自作田 粟壹升付 東賣者鹽田 西水洞·南大海·北金礮田 四標分明田 永永放賣爲去乎 後有爭望者 持此下正事

田主 自筆 成 極 眞(手決)

위의 明文은 崇禎 5년 壬申, 즉 仁祖 10년(1632) 3월 11일에 田主 成極眞이 自筆로 金大吉에게 작성해 준 문기로, 내용은 "긴요하게 쓸 데가 있어 同人 앞에 牛皮 한 장을 貸用하고 값은 伐浦員에 스스로 일군 粟 한 되부치기 밭을 영원히 방매하므로, 후에 다투어 원망하는 자가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바로 잡으라."는 것이다. '伐浦'는 현 南元邑 泰興 2리의 옛 이름으로 지금도 '펼개'가 남아 있다.

順治拾肆年戊戌 參月拾□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妻母前衿得耕食爲如乎 都猪員粟種壹斗付只 四標段 東小路·南旨林·西磊林·北梁亨助田 及里內南邊員 奴所丁同處買得田 米半壹斗付只 四標段 東金自好田·南金德廻田·西旨·北高元福代(垞)田庫乙 春耕迫急之時 無農牛乙仍于 勢不得已 實常布拾疋價以計之 八禾農牛壹首乙 捧上爲遣 同四標分明田庫乙 同人前永永放賣爲去乎 後日吾矣同生子孫中 爭望雜談有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辨正事

訂 兼司僕 夫 守 一(手決)

保 定虜衛 金 元 弼(手決)

田主自筆 校 生 金 挺 西(手決)

위의 明文은 順治 14년 戊戌<sup>24)</sup>, 즉 孝宗 8년(1657) 3월 중순 경에 田主 校生 金挺西가 買受人(姓名 脱落)에게 작성해 준 文記로, 그 내용은 "要用所致로 妻母前에 깃득(衿得)하여 갈아먹던 都猪員 粟種 한 말부치기(4포 생략)와

24) 順治 14년의 干支는 丁酉이고 戊戌은 15년이므로 어느 하나가 착오이다.

里內南邊員 奴 所<sub>レ</sub>同에게 買得한 밭 米牟 한 말부치기(4포 생략) 두 곳을, 春耕이 急迫한 때에 農牛가 없는 탓으로, 하는 수 없이 실제의 常布 열 필 값으로 계산하여 8살배기 農牛 한 마리를 받고, 同 4포가 분명한 밭들을 同人에게 영원히 放賣한다”는 것이다. 文記는 田主 自筆로 작성되고 있으며, 訂人에는 兼司僕 夫守一이, 保證에는 定虜衛 金元弼이 立會하고 있다.

康熙拾貳年癸丑 拾月拾柒日 僉使金福前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三寸金得麗處買得耕食爲如乎 石境沙員 米牟玖斗付只田 四標段 東夫昌弼田·南高承先田·西北買者田 四標爲等如分明爲在田庫 價本段 肆禾黑雄牛壹首 准計捧上爲遺 同人前 永永放賣爲去乎 後此良中 若有相爭爲去等 持此明文內乙用良 告官卞正事

田主 金元弼(手決)  
證人 金汝鳳(手決)  
證人 金尚益(手決)  
證人 朴太衣(手決)  
筆執 孫得立(手決)

위의 明文은 康熙 12년 癸丑, 즉 顯宗 14년(1673) 10월 17일에 田主 金元弼이 僉使 金福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要用所致로 三寸 金得麗에게 매득하여 경작하던 石境沙員의 米牟 아홉 말부치기 밭을 네살배기 黑雄牛 한 마리로 값을 계산하여 받고 同人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康熙十四年乙卯 拾月初伍日 金羽遷處(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同人處 今生雌馬壹匹貸得用下爲遺 價本(段 報給)無路 祖上傳來耕食爲如乎 未落堂東邊員 粟種壹斗柒升付只田 四標段 東(及南)無主陳 荒田·西奴草萬田·北周竹磊田 及豆好玉水洞東邊員 貳庫合粟種貳斗壹升付只田 四標段 東奴草萬田·南買者田·西水洞田·北山伊田 及所好東邊員 參庫合粟種 伍斗(付只)田 四標段 東同山伊·南買者田·西及北同山伊田 及大堂西南邊員 粟 種壹斗伍升付只(田 四標段 東)姜太老田·南川·西水洞·北金崑田 及木員 粟種 壹斗伍升付只田 四標段 東(同人田及)姜太老田·西川·北奴豆生田 爲等如捌庫 四標分明田等乙 同羽遷處 永永放賣爲去乎 若有日後爭望者有去等 持此文記內乙 用良 告官卞正爲乎事

田主 奴 豆屎(左手寸)  
訂人 金只角同(左手寸)  
訂保 奴 成男(左手寸)  
筆執 許承逸(手 決)

위의 明文은 康熙 14년 乙卯, 즉 肅宗 원년(1675) 10월 초 5일에 田主 奴  
芻屎가 金羽遷에게 작성해 준 文記로, 내용은 “要用所致로 同人에게 今生雌馬  
한 필을 貸得하여 用下하고, 그 값을 갚아줄 길이 없기에 조상전래로 경작하  
던 未落堂 東邊員 粟種 한 말 일곱 되부치기, 芻好玉水洞 東邊員 두 곳 합계  
粟種 두 말 한 되부치기, 所好 東邊員 세 곳 합계 粟種 닷 되부치기, 大堂西  
南邊員 粟種 한 말 닷 되부치기 및 水員의 粟種 한 말 닷 되부치기 등 여덟  
곳의 밭을 金羽遷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이다. 다섯 地境 여덟 筆地의  
作物은 모두 粟種이며, 그 面積은 열한 말 여덟 되부치기이다.

乾隆陸年辛酉 拾貳月初捌日 金鎮基處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正木參疋貸用後 價本段 他無報給故 三石洞員 粟種參斗伍  
升付田 肆標段 東買者田·南奴達奉田·西金世奉田·北玄千吉田 肆標分明田庫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此後或有雜談是去等 持此文告官卞正事 本文記段 他田  
并付故 不得許給事

田主 吳命漢(手決)

筆執 康萬元(手決)

위의 明文은 乾隆 6년 辛酉, 즉 英祖 17년(1741) 12월 초 8일에 田主 吳命  
漢이 金鎮基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要用所致로 正木 세 필을 貸用한 후, 값  
은 달리 갚아줄 수 없으므로 三石洞員 粟種 서 말 닷 되부치기 밭을 同人에게  
영원히 방매하되, 本文記는 다른 밭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  
는 내용이다.

光緒十一年乙酉 三月二十日 金熙股處明文

右明文事段 矣身緊有用處故 玄永興處 買得野田 稷種參斗落 在於東衣里西位南  
吐石員是乎所 東南大川·西小路·北金致鎰田 四標分明田庫乙 決價貳拾兩 右人  
處準捧後 永永放賣 如是明文成給爲去乎 日後憑考卞正事

田主 韓相國(手決)

證人 金千重(手決)

위의 明文은 光緒 11년 乙酉, 즉 高宗 22년(1885) 3월 20일에 田主 韓相國  
이 金熙股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긴급히 사용할 데가 있어서 玄永興에게 매  
득한 東衣里 吐石員에 있는 野田 稷種 서 말지기를 20냥으로 값을 정하여 계  
산해 받은 후 영원히 방매하고, 이와 같이 明文을 작성해 주므로 日後에 참고

하라.”는 내용이다. 高宗年間에 와서 貨幣가 교환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筆執이 누락되어 있어 불완전한 文記라 할 수 있다.

### (3) 同色馬와 賈馬

牧子는 자신이 기르던 馬匹이 致死했을 경우에 그 증거로 가죽을 벗겨서 官에 바치게 되는데, 이 때 官에서는 馬籍에 올라 있는 것과 대조하여 毛色이 같을 경우에만 받아들여 故失馬(事故馬)로 처리한다. 그러나 毛色이 틀리거나 毛皮에 損傷이 있을 경우에는 물리쳐서 받지 아니하고 그 댓가로 牧子들에게 같은 색깔의 말을 징수하는데 이를 同色馬<sup>25)</sup>라 하였다. 이것이 牧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康熙拾年辛亥 參月貳拾日 前僉使金礪前明文

右明文事段 家夫宋彦合亦 他無馬匹殺食 爲等如發現於去官 則國馬殺食樣以 同色馬徵納亦催促之中 家夫身死乙仍于 汝矣身處擔當爲臥乎所 勢不得已 同人前貳禾雌馬壹匹貸得納官爲違 價本段 家夫四寸宋家處 買得耕食爲在 前備所西門外員 皮牟拾參斗落只田 四標段 東玄召億門家坐田 西小路及婢順夫田 南宋元一田 北金得己田 四標爲等如分明田 永永許報放賣爲去乎 吾矣子孫族枝中 雜談人是去等 持此文記 告官卞正爲乎事

田主 良 女 吾 夫(右手寸)  
證 兼司僕 金 元 弼(手 決)  
證保 梁 山 男(左手寸)  
筆執 鎮 撫 金 良 得(手 決)

위의 明文은 康熙 10년 辛亥, 즉 顯宗 12년(1671) 3월 20일에 田主 良女 吾夫가 前 僉使 金礪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내용은 “家夫( 남편 ) 宋彦合이 달리 馬匹을 잡아먹은 일이 없음은 모두 去官(前任官)에게 드러났는데, 國馬를 잡아먹은 양으로 同色馬를 거두어 바치라고 독촉하던 중에 남편이 사망한 탓으로, 이몸에게 담당시키는 바, 하는 수 없이 同人에게 두살배기 雌馬 한 필을 貸得하여 納官하고 값은 남편의 4촌 宋家에게 買得하여 갈아먹던 前備所 西門 밖 걸보리 열 세 말지기 밭(4표 생략)을 영원히 방매하므로 나의 子孫族枝 중에 雜談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 文記를 가지고 官에 告하여 바로 잡으라”는 것이다.

25) 拙稿 ; 前揭書, p. 94.

그리고 貢馬의 備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기가 있다.

康熙拾柒年戊午 閏參月拾□日 <李虞臣前明文>

右明文事段 矣徒兄弟皆是<탈락> <同>人前 駿骨烏驪月羅禾參雄馬壹匹價 步木拾參<疋 貸出> 貢馬備納後 價本則婢良生段 烘爐桶水員 租種<탈락 四標段 東>高汝男番·西水洞·南婢金生番 北小路番庫 本文記<并以>放賣爲 婢金生則烘爐桶水員貳夜味 合租種陸<탈락 四標段 東高>汝男番·西南水洞·北<공란>番庫 及黃月羅雄<탈락> 同李虞臣前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燒失故 <許給不得爲>去乎 日後子孫中 雜談隅有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卞正>事

番主 私婢 良 生(右手寸)

番主 私婢 金 生(右手寸)

證人 金 戒(手 決)

筆執 金應鎰(手 決)

위의 明文은 康熙 17년 戊午, 즉 肅宗 4년(1678) 3월에 番主 私婢 良生과 金生 姉妹가 李虞臣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그 내용은 駿骨烏驪月羅 세살배기 숫말 한 필 값으로 步木<sup>26)</sup> 13필을 빌려 貢馬를 마련해 바친 후, 그들 소유의 논들을 방매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는 本文記를 引導하고 있으나 후자는 燒失되어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는 논의 면적이 夜味(배미)로 표기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4) 免講과 免取才

免講은 글자 그대로 考講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考講은 朝鮮 초기부터 校生들에게 勉學을 권하기 위해 試講해 왔으나<sup>27)</sup> 朝鮮 후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단지 勸學이라는 명분 아래 軍役變通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었다. 考講의 응시 대상은 仁祖 4년(1626) 경에는 額內의 校生으로 落着되었으나 肅宗 45년(1719)에 가서는 書院과 祠院의 院生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 즉 이들이 考講에 응시해 落講했을 경우 軍役に 充當하고자 한 것이 그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 免講帖이었다. 이는 納粟策처럼 財政의 보충을 위해 발급되었는데, 顯宗 2년(1661)에는 그 價格까지 策定되었었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監司나 守令이 官衙와 鄉校의 財政 확보책으로 사사

26) 步兵에 딸린 軍保로부터 받아들이는 배나 무명. 步布, 步兵布라고도 한다.

27) 『經國大典』 禮典 獎勵條 參照.

로히 발급되었던 것이다.<sup>28)</sup>

濟州島의 경우 『朝鮮王朝實錄』英祖 21년(1745) 5월 癸未條에 의하면, “濟州 牧使 尹植이 本島의 일을 狀啓한 내용 중에, 儒品과 假率들을 考講과 試射에서 떨어뜨려 騎兵과 步兵에 充當하자, 성이 난 이들이 深夜에 殿牌를 奉安한 客舍에 몰려 들어 哭을 하였다”<sup>29)</sup>는 기록이 있다.

본 전담문기의 경우는 어떠한지 예를 들어보자.

康熙拾年辛亥 捌月初肆日 前僉使金礪前明文

右明文事段 同人處粟玖石乙 免講次 納官貸出爲有如乎 他無報給之路 妻甥夫尚弼 買得爲在 石敬沙員 米牟拾斗落只田 肆標東高就斗田·西高元綱田·南金得麗田·北夫興弼及買者田 肆標爲等如分明田庫 同人亦中放賣爲去乎 後次良中 雜談人是去等 此明文告官卞正事

田主 校 生 金 鼎 五(手決)

證 校 生 文 泰 禮(手決)

證 定 虜 衛 吳 山 民(手決)

筆執 鎮 撫 金 良 得(手決)

위의 明文은 康熙 10년 辛亥, 즉 顯宗 12년(1671) 8월 4일에 田主 校生 金鼎五가 前 僉使 金礪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그 내용은 “同人에게 粟 9石을 아들의 免講을 위해 빌려 官에 납부하였으나 갚아 줄 길이 없어 妻舅 夫尚弼에게 買得한 石敬沙員 쌀보리(米牟) 열 말지기 밭(4포 생략)을 同人에게 放賣한다”는 것이다. 田畓文記에 흔히 쓰이는 ‘永永放賣’의 ‘永永’이 누락되어 있다. 즉 아들의 免講을 위해 빌린 粟 아홉 섬을 갚을 길이 없어 밭을 방매한다고 하였으나, 실은 밭으로 밭을 갚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取才를 免하기 위해 밭을 파는 경우다.

康熙□□□□ 肆月拾參日 前僉使金礪前明文

右明文事段 子時善免取才次以 壯雌馬壹匹乙 貸出官納爲遣 他無報給之物 祖上流來耕食爲在 烘爐里內員 粟種貳斗落只田 四標段 東小路及玄德敬田·西李□□及安德勞家坐代田·南安德勞田·北買者田 四標爲等如分明正爲在田庫乙 同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若有爭望者是去等 持此文告官卞正事

28) 尹熙勉: 『朝鮮後期鄕校研究』 一潮閣 1990. pp.139-151 參照.

29) 「領議政金在魯曰 濟州牧使尹植 狀論本島 有儒品假率等名色 見落於考講試射 降充騎步兵 則此輩發怒 深夜會哭於客舍 殿牌奉安之所云」

朝鮮後期 濟州島 土地賣買의 實狀

田主 宋 翰(手決)  
訂人 宋 時 維(手決)  
訂保 玄 潤 瞻(手決)  
筆執 金 得 宗(手決)

위의 明文은 年代가 탈락되어 未詳이나 4월 13일에 田主 宋翰이 前 僉使 金 璠에게 작해 준 文記로, 아들 宋時善의 取才를 免하기 위해 壯雌馬 한 필을 貸出하여 官에 남부하고 달리 값을 물건이 없으므로 祖上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갈아먹던 烘爐里內員 粟種 두 섬지기 밭을 同人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이다.

取才는 원래 '재능을 취한다는 뜻', 즉 여러 가지 재능을 시험하여 뽑는 것으로 각 法典의 吏典에는 取才, 兵典에는 試取라 하였다. 그런데 取才에는 (1)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官職에 임명하기 위한 시험, (2) 이미 解任된 사람을 다시 관직에 임명하기 위한 시험, (3) 祿俸이 없는 官員에게 지급하는 實職에 임용하기 위한 시험 등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庶民들이 관직에 나아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라 함이 적당하다. 그러므로 본 明文의 '免取才'는 오히려 '免講'을 잘못 表記한 것이 아닌가 한다. 관직에 나아가는 시험을 면하려는 사람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5) 還上穀의 備納

康熙貳拾參年甲子 柒月初拾日 金興德宅首奴禾來同處明文

右明文事段 矣祖母年至九十歲老人以 還上多數受食爲有如乎 官行次捧上時 備納 極難乙仍于 同宅皮牟壹石 粟壹石伍斗貸得 無弊納官後 他無報給之物 愼永男處 買得耕食爲在田 大倉員 粟種壹斗落只 四標東買者田·西小路·南康景興田·北 姜海敏田 四標爲等如分明爲在田庫乙 同宅永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 吾矣元(遠) 近族中 相爭之弊有去等 持此文告官卞正事

田主 私奴 鐵 金(左手寸)  
證人 出身 高元益(手 決)  
證保 出身 高元進(手 決)  
筆執 鐵撫 李得珍(手 決)

위의 明文은 康熙 23년 甲子, 즉 肅宗 10년(1684) 7월 10일에 田主 私奴 鐵 金이 金興德의 首奴 禾來同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내용은 "나의 祖母는 나이 90세에 이른 老人으로 환자(還上)를 다수 받아 먹었는데, 官員이 행차하여 받

을 때에 마련하여 납부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탓으로, 同宅으로부터 皮牟 한 섬과 粟 한 섬 닷 되를 빌려 아무런 폐단이 없이 官에 납부한 후, 달리 갚아 줄 물건이 없으므로 愼永男에게 買得하여 갈아먹던 大倉員에 있는 粟種 한마지기 밭을 同宅에 영원히 放賣한다” 는 내용이다. 즉 私奴 鐵金이 90세된 祖母가 받아먹은 還上穀을 갚기 위해 愼永男에게 샀던 토지를 방매하고 있다.

文記上으로는 奴와 奴 사이에 토지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金興德과 田主인 私奴 鐵金 간의 매매이며, 이와 같은 매매형식은 당시 매매행위를 천시하는 士大夫 사회의 慣行이었다.

康熙三十七年戊寅 五月初七日 金羽遷前明文

右明文事段 去丙子年家父生時 末子任致明名字 □□□□石貸出 官納爲遣 至價本未報爲有如何 □□□處買得爲有在 地壯泉北邊員 租種壹斗伍升付只 四標段 東·西·北水洞·南同人番 及祖上傳來 大番西邊員 粟種□□□□田 四標段 東私奴西廻番·西許民田·南李孝林田·北官番等 四標分明爲在田番以 同金羽遷前永永報納爲去乎 日後子孫族屬中 雜談偶是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卞正爲乎事

田番 玄 氏(右手寸)  
訂 四寸 玄時希(手 決)  
訂 婿 高戒雄(手 決)  
筆執 梁汝信(手 決)

위의 明文은 康熙 37년 戊寅, 즉 肅宗 24년(1698) 5월 7일에 田番(主) 玄氏가 金羽遷에게 작성해 준 것이다. 내용은 “지난 丙子年(肅宗 22, 1696) 家父〔 남편〕 生時에 末子 任致明의 名字로 □□ 섬을 대출하여 官에 납부한 후 갚을 갚지 못하자, 某某에게 매득한 地莊泉北邊員 租種〔법씨〕 한 말 닷 되부치기 및 祖上傳來의 大番〔하논〕<sup>30)</sup> 西邊員 粟種 □□ 부치기 등 4표가 분명한 田番으로 金羽遷에게 영원히 갚아 준다는 내용이다. 탈락으로 인하여 막내 아들 명의로 대출했던 곡식이 무엇이며 얼마였는지 알 수가 없다.

## (6) 造家

道光貳拾捌年戊申 四月初二日 金聖兼處相換明文

30) '하논'은 서귀포시 서흥동 지경 분지에 논이 밀집되어 있는 경지의 이름. 그 분지를 이루는 주위는 모두 밭이다.

右明文事段 同人流來是在 東衣貴里內員 所謂碧道田西南邊中 造家次 請換而  
今爲作家後 他無報代之田故 同里大路南邊員 吾矣舊家基田 皮牟壹石付內 南邊  
拾壹斗付只 四標段 西北賣者田·東梁齊琮田·南金麗珉及玄處景田 標內分明田  
庫 永爲割報是矣 陌不如同人田故 貳斗付加給相換 而本文段 餘田并付故不得許  
與 日後子孫族屬中 若有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歸正事

田主 自筆執 金 鍾 悅(手決)

위의 明文은 道光 28년 戊申, 즉 憲宗 14년(1848) 4월 2일에 田主 金鍾悅이  
自筆로 金聖兼에게 작성해준 文記이다. 내용은 同人(金聖兼)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東衣貴里 거리왓(里內員), 이른바 碧道田 西南邊中에 집을 짓기 위  
해 相換을 요청하고 지금 집을 지은 후 달리 대신 보상할 발이 없으므로 同里  
大路南邊員의 나의 舊家基田(옛집터왓) 걸보리 한 섬 부치기 중 南邊 열 한  
말부치기 발(4표는 서북쪽이 賣者田, 동쪽이 梁齊琮의 발, 남쪽이 金麗珉 및  
玄處景의 발)으로 標內가 분명한 곳을 영원히 分割하여 報償하되, 면적이 同  
人 발만 못하므로 두 말부치기를 더 지급하여 상환하고 本文記는 나머지 발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탓으로 許與하지 못하니, 日後에 子孫族屬 중에 雜談(紛  
爭)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歸正할 일이라 하였다. 즉 집을 짓  
기 위해 자신의 텃밭 일부와 相換하고 있다.

### (7) 作畝

乾隆玖年癸亥 柒月拾玖日 金鎮基前明文

右明文事段 去乙亥年分 同人先世時良中 矣身庫 伏在於烘爐里地境 地莊泉味 同  
人先世畝庫之側 而同田庫曲入於畝邊 可作混并之勢乙仍于 問于矣身處 并以作畝  
而耕食者已久 而別無論價之端是在如中 到今皮牟壹石許給乙仍于 依樣擡之 收如  
明文爲去乎 四標段 東及南買者田·西水洞·北賣者田 爲等如分明是在 租種壹升  
伍合付只 作畝者 永永許給爲去乎 此後如有雜談是去等 以此卞正事

畝主 玄萬初 方喪代子 烏 股(手決)

筆執 韓智准(手決)

위의 明文은 乾隆 9년 癸亥,<sup>31)</sup> 즉 英祖 20년(1744) 7월 19일에 畝主 玄萬初  
의 방상 代子 烏股이 金鎮基에게 작성해 준 문기로, "지난 乙亥年(肅宗 21,  
1695) 줌인 同人 先世 때에 이몸의 발이 烘爐里 지경인 地莊泉味の 同人 先世

31) 癸亥는 乾隆 8년의 干支이므로 어느 하나가 착오이다.

의 畓(논) 옆에 있는데, 그 밭이 畓邊에 굽어져 들어가 한데 합칠 형세인 탓으로, 이몸에게 묻고 합쳐서 논을 만들어 갈아먹은지 이미 오래 되어 별로 값을 의논할 실마리가 없던 터에, 지금에 이르러 皮牟 한 섬은 許給한 畓으로 樣式에 따라 받고, 명문을 요구하므로 4표가 모두 분명한 租種 한 되 芻 息부 치기를 논을 만든 사람에게 영원히 넘겨주므로, 이후에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로 바로 잡으라.”는 내용이다.

### (8) 罷養

威豐元年辛亥 三月二十八日 同姓五寸金聖兼前明文  
右明文事段 父主生時入養於宗家 放賣田庫 所謂東好每田壹庫 推價貳拾疋 乃爲 還退 而厥後如何罷養 還歸本家 未滿十年 不幸早死 而同田庫一款未決 到此顧念 事勢 右田既是先世掃條也 不可不代納于宗家 然後乃可後便之勢故 安鼎伊坪代員 粟種伍斗付 四標段 東鄭良寬田·西奴江山上典田·南金宗大田·北名不知金生員 田 四標分明田庫 永爲代納 日後子孫族屬中 若有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歸正 事

田主 金光春(手決)

筆執 康有鶴(手決)

위의 明文은 威豐 원년 辛亥, 즉 哲宗 2년(1851) 3월 28일에 田主 金光春이 同姓 五寸인 金聖兼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父主 生時에 宗家에 入養하여 방매한 東好每田 한 곳의 값을 推算하여 20필을 이내 도로 물리려 하였는데, 그 후 어떻게 하여 양자의 인연을 끊고 本家에 돌아온 지 10년이 채 못되어 불행히 早死하였으나, 그 밭 한 조항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였으므로, 지금에 이르러 事勢를 돌이켜 생각하니, 위 밭은 이미 先世의 掃條이므로 불가불 宗家에 代納한 뒤에야 뒤가 편할 형편이므로, 安鼎伊坪代員에 있는 粟種 芻 말부치기(4표 생략) 밭으로 영원히 代納한다는 내용이다.

### (9) 相換

順治伍年戊子 六月 同生兄金大吉前明文  
〈右明〉文事段 衣怪古里員 皮牟四石落只 古羅田員□□田 新村亭在員 皮牟貳什 斗落只 及古(羅田)員 皮牟參石落只 合貳庫田果 永永相換爲去乎 後次良中 雜談 爲去乙等 持此文告官卞正事

田主 自筆 同生弟 大振(手決)

위의 明文은 順治 5년 戊子, 즉 仁祖 26년(1648) 6월에 田主 同生弟 金大振이 同生兄 金大吉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衣怪古里的 皮牟 석 섬지기를 古羅田員의 皮牟 스무 말지와 同 지경의 皮牟 석 섬지기를 합한 석 섬 스무 말지와 相換하고 있는 내용이다.

## V. 面積과 價格의 表示

1) 雄馬 두살배기를 貸用하고 地莊泉畚 租種 ? 부치기 방매(同人處 雄馬禾貳□匹乙貸得用下爲遣 金鳳智處買得起 耕爲如乎 地莊泉畚租種□□付只畚庫乙 金大吉處 永永放賣爲去乎).

2) 烘爐望員 粟種 ? 부치기와 西歸堂員 粟 여덟 되부치기를 받버(山稻) 한 섬을 받고 방매(同人處 烘爐望員 粟種□□付只 … 及西歸堂員 粟捌升付只 … 兩庫四標分明 田庫價本 山稻壹石捧上爲遣).

3) 牛皮 한 장을 대용하고 伐浦員 自作田 粟 한 되부치기 방매(同人前 牛皮壹張貸用爲遣 價本段 伐浦員自作田 粟壹升付 … 永永放賣爲去乎).

4) 衣怪古里員의 皮牟 녀 섬지기와 新村亭在員의 皮牟 20 말지기 및 古羅田員의 皮牟 석 섬지기와 相換(衣怪古里員 皮牟四石落只 古羅田□□□田 新村亭在員 皮牟貳什斗落只 及古(羅田)員 皮牟參石落只 合貳庫田果 永永相換爲去乎).

5) 都猪員 粟種 한 말부치기와 里內南邊員 米牟 한 말부치기를 實常布 열 필 값으로 여덟살배기 農牛 한 마리를 받고 방매(都猪員粟種壹斗付只 … 及里內南邊員 奴所尙同處買得田 米牟壹斗付只 … 春耕迫急之時 無農牛乙仍于 勢不得已 實常布拾疋價以計之 八禾農牛壹首乙 捧上爲遣).

6) 三生堂員 粟種 여덟 되부치기를 正木 네 필로 환산하여 地獮皮로 만든 短服 한 벌을 받고 방매(三生堂員 玄世廻處買得 粟種捌升付只內 … 同人處 永永放賣爲遣 價本段 正木肆疋以折定 地獮皮短服壹領 准捧上爲去乎).

7) 烘爐面 地壯泉畚 租種 네 말부치기를 騎馬 한 필을 받고 방매(烘爐面地壯泉員 好音畚 租種肆斗付只畚庫乙 金礪亦中 永永放賣爲遣 價本段 騎馬壹匹捧上爲去乎).

8) 教野里內員 米牟 두 말부치기를 正木 여섯 필을 받고 방매(教野里內員

米牟貳斗付只田 … 同人前放賣爲遣 價本段 正木陸疋准計捧上後 放賣爲去乎).

9) 西唐原 皮牟 석 섬부치기를 正木 40필로 환산하여 粟 여덟 섬을 받고 방매(祖上流來西唐員 皮牟參石付只田庫 … 同人前放賣爲遣 價本段 正木肆拾疋折定 粟捌石准捧 永永放賣爲去乎).

10) 烘爐地藏畚 北邊員 租種 한 말지기 14필지를 木棉 일곱 필로 환산하여 粟 스무 말을 받고 방매(烘爐地藏畚北邊員 租種壹斗落只 拾肆夜味畚庫 … 價折段 木棉柒疋折以 粟貳拾斗准計捧上後).

11) 烘爐地藏畚 東邊員 租種 닷 되지기 두 필지를 正木 다섯 필로 환산하여 粟 스무 말을 받고 방매(烘爐地藏畚東邊員 租種伍升落只 貳夜味畚庫乙 … 價本段 正木伍疋折以 粟壹石准計捧上爲遣).

12) 都猪田員 粟 한 말부치기를 木棉 12필로 환산하여 粟 두 섬을 받고 방매(都猪田員 粟壹斗付只田 … 價本段 木棉拾貳疋折定 粟貳石准計捧上爲遣).

13) 두살매기 雌馬 한 필을 貸得하여 官에 납부하고 前備所西門外員에 있는 皮牟 열 세 말지기 방매(同人前 貳禾雌馬壹匹貸得納官爲遣 價本段 家夫四寸宋家處 買得耕食爲在 前備所西門外員 皮牟拾捌斗落只田 … 永永許報放賣爲去乎).

14) 粟 아홉 섬을 貸得하고 石敬沙員의 米牟 열 말지기 방매(粟玖石乙 貸得石敬沙員 米牟拾斗落只田 … 同人亦中 放賣爲去乎).

15) 芻橋來員의 粟 너 되지기를 正木 세 필을 받고 방매(芻橋來員 粟肆升落只田 … 價本段 正木參疋准計捧上後 永永放賣爲去乎).

16) 石境沙員의 米牟 아홉 말부치기를 네살매기 검은 숫소 한 마리를 받고 방매(石境沙員 米牟玖斗付只田 … 價本段 肆禾黑雄牛壹首 准計捧上爲遣 同人前 永永放賣爲去乎).

17) 今生雌馬 한 필을 貸用하고 未落堂 東邊員 粟種 한 말 일곱 되부치기, 芻好玉水洞 東邊員 두 곳의 粟 두 말 한 되부치기, 所好東邊員의 세 곳 粟種 닷 되부치기, 大堂西南邊員의 粟種 한 말 닷 되부치기 및 水員의 粟種 한 말 닷 되부치기 방매(要用所致以 同人處 今生雌馬壹匹貸得用下爲遣 價本〈段 報給〉無路 祖上傳來 食爲如乎 未落堂東邊員 粟種壹斗柒升付只田 … 及芻好玉水洞東邊員 貳庫合粟種貳斗壹升付只田 … 及所好東邊員 參庫合粟種伍斗〈付只〉田 … 及大堂西南邊員 粟種壹斗伍升付只〈田〉 … 及水員 粟種壹斗伍升付只田 … 爲等如捌庫 四標分明田等乙 同羽遷處 永永放賣爲去乎).

18) 駿骨烏驪月羅馬 세살배기 한 필 값을 步木 열 세 필로 환산하여 貢馬를 備納한 후 烘爐桶水員의 租種 ? 부치기 등을 방매(〈同〉人前 駿骨烏驪月羅禾 參雄馬壹匹價 步木拾參〈疋 탈락〉 貢馬備納後 價本則婢良生段 烘爐桶水員 租種〈탈락〉 … 本文記〈并以〉放賣爲跡, 婢金生則烘爐桶水員貳夜味 合租種陸〈탈락〉 … 及黃月羅雄〈탈락〉 同李虞臣前 永永放賣爲乎矣).

19) 皮牟 한 섬과 粟 한 섬 닷 말을 貸得하고 大倉員의 粟種 한 말지기 방매(同宅 皮牟壹石 粟壹石伍斗貸得 無弊納官後 他無報給之物 慎永男處買得 食爲在田 大倉員 粟種壹斗落只 … 同宅 永永放賣爲去乎).

20) 甲布 아홉 필 값으로 환산하여 粟 넉 섬을 貸食하고 獨子員 粟種 한 말 닷 되부치기 방매(甲布玖疋價以折定 粟肆石貸食爲遺 他無報給之物乙仍于 獨子員祖上流來爲有在田 粟種壹斗伍升付只 … 同人前 永永放賣爲去乎).

21) 長德巨里員의 米牟 세 말지기를 粟 두 섬과 上價布 한 필을 받고 방매(長德巨里員 同生前買得 食爲有在 米牟參斗落只 … 價本段 粟貳石上價布壹疋 准計捧上爲遺).

22) 壯雌馬 한 필을 貸用하고 烘爐里內員의 粟種 두 말지기 방매(壯雌馬壹匹乙 貸出官納爲遺 他無報給之物 祖上流來耕食爲在 烘爐里內員粟種貳斗落只 田 … 同人前 永永放賣爲去乎).

23) 腮木田員의 粟種 닷 되지기를 正木 열 두 필 값으로 환산하여 粟穀 엿 섬 닷 말을 받고 방매(○木田員 粟種伍升落只田庫 … 價本段 正木拾疋價以折 粟穀陸石伍斗准捧後 同宅亦中 永永放賣爲去乎).

24) 汝古木旨員의 粟種 한 말부치기와 妻男 高汝綱에게 買得한 粟種 석 되부치기, 합하여 한 말 석 되 부치기를 甲布 세 필로 환산하여 粟 한 섬과 甲布 한 필을 받고 방매(汝古木旨員 粟種壹斗付只 及妻甥高汝綱處買得 粟種參升付只田 合壹斗參升付只田庫 … 價本段 甲布參疋以折定後 粟壹石甲布壹疋 准計捧上後 同田庫乙 永永放賣爲去乎).

25) 縣地尒丁 東北邊員의 粟種 넉 되지기 밭을 實價布 세 필로 계산하여 받고 방매(縣地尒丁 東北邊員 粟種肆升落只田 … 價本段 實價布參疋 准計捧上爲遺).

26) 里以南邊員의 袋田 米牟 두 되부치기와 縣地尒丁員의 粟 두 되부치기를 粟 닷 섬을 받고 방매(里以南邊員代〔袋〕田 米牟貳升付只田庫 … 及縣地尒丁員 粟貳升付只 … 價本段 粟伍石准計捧上爲遺 同宅永永放賣爲去乎).

27) (還上穀을) 貸出하여 官에 납부한 후 地莊泉 北邊員의 租種 한 말 닷 되부치기와 大畚 西邊員의 粟種 ? 부치기 방매(去丙子年家父生時 末子任致明名字 □□□石貸出 官納爲遣 至價本未報爲有如乎 □□□處買得爲有在 地莊泉北邊員 租種壹斗伍升付只 … 及祖上傳來 大畚西邊員 粟種□□□田 … 同金羽遷前 永永報給爲去乎).

28) 獨子員의 粟 한 말 닷 되부치기를 價布 닷 필로 환산하여 粟 두 섬 네 말을 받고 방매(獨子員 粟壹斗伍升付只田庫 … 價本段 價布伍疋以折定 粟貳石肆斗 准計捧上爲遣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29) 伊愁於員의 粟種 엇 되부치기를 價布 닷 필로 환산하여 粟 25말을 받고 방매(伊愁於員 粟種陸升付只 … 價本段 價布伍疋折定 粟貳拾伍斗准計捧上爲遣).

30) 伊愁浦員의 皮牟 일곱 말 부치기를 粟 두 섬 열 말을 받고 방매(伊愁浦員 妻邊衿得田 皮牟柒斗付只田庫 … 價本段 粟貳石拾斗准計捧上爲遣 同田庫乙 永永放賣爲去乎).

31) 邊萬殊田員의 皮牟 한 말 닷 되부치기를 雜穀 넉 섬을 받고 방매(邊萬殊田員 皮牟壹石伍斗付只田 … 價本段 雜穀肆石准計捧上爲遣).

32) 相換文記이나 탈락이 심함.

33) 水望里內員의 皮牟 세 말부치기를 正粟 한 섬 닷 되를 받고 방매(水望里內員 皮牟參斗付只田 … 同泉申處 永永放賣爲遣 價本段 正粟壹石伍斗 准計捧上爲去乎).

34) 正粟 넉 섬을 正木 여섯 필 값으로 환산해 받고 烘爐古里員의 망동산 북변 皮牟 닷 말부치기로 報給(金主簿前 正粟肆石乙 正木陸疋價折以 准計捧上資生爲遣 價本段 妻亦嫡 甥吳迥處買得爲有在 烘爐古里員望童山北邊 皮牟伍斗付只田 … 已妻父掃墳條以 遣在爲有如乎 同田庫乙 勢不得已 永永報給爲去乎).

35) 粟 여덟 섬을 正木 열 세 필 값으로 환산해 받고 烘爐桶水員의 租種 한 말 엇 되부치기 방매(粟八石乙 正木拾參(疋)價以折定 准計捧上爲遣 價本段 掃祭條是在 烘爐桶水員 租種壹斗陸升付只 … 永永放賣爲去乎).

36) 狐村面 衣貴大堂員의 皮牟 두 섬부치기를 正粟 열 섬을 받고 방매(在於狐村面衣貴大堂員 所謂夜又田 皮牟貳石付只 … 價本段 正粟拾石準計捧上爲遣 同人前 永永放賣爲去乎).

37) 正木 세 필을 貸用하고 三石洞員의 粟種 세 말 닷 되부치기 방매(正木 參疋貸用後 三石洞員 粟種參斗伍升付田 …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38) 作畚.

39) 지난 해 여름에 섬이나 되는 곡식으로 은혜를 입고 舊里員의 牟種 엿 말지기로 報恩(上年夏間石穀垂惠 生活至恩 同人前無報惠乙仍于 舊里員 牟種 陸斗落只田庫 … 同人前 永永報恩爲乎矣).

40) 東衣貴 東邊 月童山の 粟種 한 말 닷 되부치기와 州 右面 牛叱屯里 東南邊員의 皮牟 여덟 말 부치기와 相換(東衣貴東邊月童山員 粟種壹斗伍升付只 田庫果 同人曾祖父主別得是在 州右面牛叱屯里東南邊員 皮牟捌斗付只田庫 從 近境永永相換).

41) 正木 30尺을 貸用하고 金石磊北邊員의 粟 여덟 되치기 방매(同人處 正木三十尺貸用資生 而他無報給之物故 矣二禾雄馬一匹 放賣於牧子奴可外處 而 妻父名字捧明文爲有在 金石磊北邊員 粟捌升落只田 … 同人處 永永放賣爲乎 矣).

42) 所好池員의 두 곳 粟種 한 말 여덟 되부치기와 連牆 西邊의 位田 한 곳 粟種 닷 되부치기, 합하여 두 말 석 되부치기를 무명 한 필 반 값으로 穀物을 받고 許賣(所好池員貳庫 合粟種壹斗捌升付 及連牆西邊位田壹庫 粟種五升付 合貳斗參升付 木壹疋半價以 穀物捧用而許賣爲乎矣).

43) (곡식을 빌려 還上穀을 갚은 후) 家垵 北邊員의 麻子 두 말부치기로 報 給(多數受食還上爲)乎如可 不得官納乙仍于 同人前 □□□□□後 價本段 他無報給乙仍于 矣家坐北邊 <祖上>流來田 麻子貳斗付只田 … 同人前 永<永> 報給爲乎矣).

44) 正木 한 필을 貸用하고 金石磊北邊員의 粟種 여덟 되부치기와 付舊里 南邊員의 皮牟 ? 부치기로 방매(同人處 正木壹疋貸出用下後 價本段 他無報給 乙仍于 高世恒處買得爲在 金石磊北邊員 粟種捌升付只 … 又付舊里南邊員 姜 涓處價得田 皮牟□□付 …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45) 집을 짓고 그 대가를 토지로 相換(同里大路南邊員 吾矣舊家基田 皮牟壹 石付內 南邊拾壹斗付只 … 永爲割報是矣 陌不如同人田 故貳斗付加給相換 而 本文段 餘田并付 故不得許與).

46) 和記.

47) 罷養關係.

48) 正木과 穀物을 합하여 15필 25척 값을 貸出하고 小水西邊 豆于木穴 連牆의 두 곳, 합하여 粟種 두 말 부치기 방매(右人處 正木穀物 合拾伍疋貳拾伍尺價貸出後 他無報給之物故 小水西邊豆于木穴員 金相奉處買得是在 連牆貳庫合粟種貳斗付 … 永爲放賣).

49) 正木 네 필 20척을 貸用하고 西義實里內的 甘上伊田員 皮牟 일곱 되 부치기로 報給(右人處 正木肆疋貳拾尺貸用後 價本段 他無邊通 故矣衿下田 所謂西義實里內 甘上伊田員 皮牟柒升付 … 永爲報給是矣).

50) 東衣里 吐石員의 稷種 서 말지기를 20냥을 받고 방매(買得野田 稷種參斗落 在於東衣里西位南吐石員是乎所 … 決價貳拾兩 右人處準捧後 永永放賣).

51) 마을 안 池巷員에 있는 마을 소유의 都舍, 곳간 및 基地 皮牟 두 말부치기를 200냥을 받고 방매(都舍四間一鞭 庫間一鞭及基地 皮牟貳斗付只是在里中池巷員 … 決價文 貳佰兩準捧後 如是成給明文放賣爲去乎).

이상의 내용을 편의상 표로 만들어 보면 '표2'와 같다.

〈표 2〉

番號	地 境	面 積	作物	貸用物種	換算價	實際價格	備考
1	地藏泉番	? 付只	租種	2禾驪雄馬	*	*	放賣
2	烘爐望員	? 付只	粟種	*	*	山稻 1石	"
*	西歸堂員	8升付只	粟	*	*	*	"
3	伐浦員	1升付只	粟	牛皮1張	*	*	"
4	(相換)	*	*	*	*	*	相換
5	都猪員	1斗付只	粟	*	實常布10疋	8禾農牛1首	放賣
*	里內南邊員	1斗付只	米牟	*	*	*	"
6	三生堂員	8升付只	粟種	*	正木 4疋	地獺皮短服1領	"
7	地壯泉好音番	4斗付只	租種	*	*	騎馬 1匹	"
8	敦野里內員	2斗付只	米牟	*	*	正木 6疋	"
9	西唐員	3石付只	皮牟	*	正木40疋	粟 8石	"
10	地藏番北邊員	2斗落只	租種	*	木棉 7疋	粟20斗	"
11	地藏番東邊員	5升落只	"	*	正木 5疋	粟 1石	"
12	都猪田員	1斗付只	粟	*	木棉12疋	粟 2石	"
13	前備所西門外	13斗落只	皮牟	2禾雌馬1匹	*	*	"
14	石敬沙員	10斗落只	米牟	粟 9石	*	"	"
15	豆橋來員	4斗落只	粟	*	*	正木 3疋	"
16	石敬沙員	9斗付只	米牟	*	*	黑雄牛1首	"

朝鮮後期 濟州島 土地賣買의 實狀

番號	地 境	面 積	作物	貸用物種	換算價	實際價格	
17	未落堂東邊員	1斗7升付	粟種	今生雌馬1疋	*	*	"
*	芑好玉水洞	2斗1升付	"	*	*	"	"
*	所好東邊 3天	5斗付只	"	*	*	"	"
*	大堂西南邊員	1斗5升付	"	*	*	"	"
*	水員	1斗5升付	"	*	*	"	"
18	烘爐桶水員	? 付只	租種	步木13疋	3禾雌馬1疋	*	"
*	烘爐桶水員	2夜味	租種	*	*	*	"
19	大倉員	1斗落只	粟種	皮牟1石	*	*	"
*	*	*	*	粟1石5斗	*	*	"
20	獨子員	1斗5升付	"	粟 4石	甲布 9疋		"
21	長德巨里員	3斗落只	米牟	*	*	粟2石?1疋	"
22	烘爐里內員	2斗落只	粟種	壯雌馬1疋	*	*	"
23	腮木田員	5升落只	粟種	*	正木12疋	粟穀6石5斗	"
24	汝竹古木旨	1斗3升付	"	*	甲布 3疋	粟1石 甲布1疋	"
*	買得田	3升付只	粟種	*	*	*	"
25	縣地尕丁東	4升落只	"	*	*	實價布 3疋	"
26	里以南邊員	2升付只	米牟	*	*	粟 5石	"
*	縣地尕丁員	2升付只	粟	*	*	*	"
27	地壯泉北邊	1斗5升付	租種	? 石 貸出	*	*	報給
*	大畚西邊員	? 付只	粟種	*	*	*	放賣
28	獨子員	1斗5升付	粟種	*	價布 5疋	粟2石4斗	"
29	伊愁於員	6升付只	"	*	價布 5疋	粟25斗	"
30	伊愁浦員	7斗付只	皮牟	*	*	粟2石10斗	"
31	邊萬殊田員	1石5斗付	皮牟	*	*	雜穀 4石	"
32	(相換)	*	*	*	*	*	相換
33	水望里內員	3斗付只	皮牟	*	*	正粟1石5斗	放賣
34	烘爐古里員	5斗付只	"	*	正木 6疋	正粟 4石	報給
35	烘爐桶水員	1斗6升付	租種	*	正木13疋	粟 8石	放賣
36	衣貴大堂員	2石付只	皮牟	*	*	正粟10石	"
37	三石洞員	3斗5升付	粟種	正木 3疋	*	*	"
38	地莊泉味畚	1升5合付	租種	*	*	*	許給
39	舊里員	6斗落只	牟種	石穀垂惠	*	*	報恩
40	(相換)	*	*	*	*	*	相換
41	金石磊北邊	8升落只	"	正木30尺	2禾馬1匹	*	放賣
42	所好池員 2天	1斗8升付	"	*	木 1疋價	穀物	許賣
*	連牆西邊位田	5升付只	粟種	*	*	*	"

番號	地 境	面 積	作物	貸用物種	換算價	實際價格	備考
43	家堡北邊員	2斗付只	麻子	? 貸得	*	*	報給
44	金石磊北邊員	8升付只	粟種	正木 1疋	*	*	放賣
*	付舊里南邊員	? 付只	皮牟	*	*	*	相換
45	(相換)	*	*	*	*	*	"
46	(和記)	*	*	*	*	*	和記
47	(罷養)	*	*	*	*	*	罷養
48	豆于木穴員	2斗付只	粟種	正木15疋25尺	*	*	放賣
49	義貴甘上伊田	7升付只	皮牟	正木4疋20尺	*	*	"
50	西位南吐石員	3斗落只	稷種	*	*	20兩	"
51	里中池巷員	2斗付只	皮牟	*	*	200兩	"

위 '표2'의 貸用物種은 賣渡者가 買受者에게 미리 貸用하였던 것으로, 뒤에 田畝를 放賣하는 형식으로 이를 辨濟하고 있으니, 이 역시 價格으로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이를 실제 價格의 내용과 종합해 보면, 田畝의 交換 수단으로 표시된 가격이 다양했음을 알 수가 있다. 동물과 관련해서는 雄馬·壯雌馬·雌馬·今生雌馬·騎馬·農牛·黑雄牛가 있는가 하면 牛皮 한 장, 地類皮 短服 한 벌 등이 있고, 穀物과 관련해서는 山稻·粟·雜穀·穀物·正粟 등이 있으며, 布木과 관련해서는 正木·木棉·甲布·實價布·實常布 등이 있다. 그리고 가격을 정할 때에 換算價로 이용된 물종으로는 實常布·正木·木棉·雄馬·甲布·價布 등이 있으며, 農作物은 租種·粟種·米牟·皮牟·麻子·稷種 등이 있다. 토지의 면적은 付只·落只·夜味 등으로 표시되었고, 매매의 형식은 放賣·報給·報恩·報納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VI. 結 論

本稿에서 총 51건의 전답문기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매매의 형태가 대부분 필요한 물품을 賣渡人이 買受人으로부터 먼저 빌려서 사용한 후, 그 댓가로 밭을 넘겨주는, 즉 밭으로 갚는 형식의 매매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토지의 賣買 시기도 곡식이 경작되는 기간을 피하기 위해 農閑期인 11월 달에서 이듬 해 3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나 여기서는 연중 어느 달이고 행해지고 있다.

田畚取得의 경위는 買得 14건, 祖上傳來 10건, 깃득〔衿得〕 5건, 別得 4건, 掃祭條 3건, 家坐 1건, 相換 1건의 順이고, 自作, 깃하〔衿下〕, 傳得 등으로 表記된 문기도 각각 1건씩 있었으며, 문서의 탈락 등으로 分別할 수 없는 문서도 10건이나 되었다.

田畚放賣의 事由는 1) 凶年과 貧寒(重病救食 포함) 24건, 2) 要用所致 11건, 3) 同色馬와 貢馬 2건, 4) 免講과 免取才 2건, 5) 還上米의 備納 2건, 6) 造家 1건, 7) 作畚 1건, 8) 罷養 1건, 9) 기타 4건 등으로 나타났고, 相換文記도 4건이나 되었다.

田畚의 交換 수단으로 표시된 가격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동물과 관련해서는 雄馬·壯雌馬·雌馬·今生雌馬·騎馬·農牛·黑雄牛가 있는가 하면, 牛皮 한 장, 地獺皮 短服 한 벌 등이 그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穀物과 관련해서는 山稻·粟·雜穀·穀物·正粟 등이 있었으며, 布木과 관련해서는 正木·木棉·甲布·實價布·實常布 등이 있었다. 그리고 가격을 정할 때에 換算價로 이용된 물종으로는 實常布·正木·木棉·雄馬·甲布·價布 등이 있었으며, 農作物은 租種·粟種·米牟·皮牟·麻子·稷種 등이 있었다. 토지의 면적은 付只·落只·夜味 등으로 표시되었고, 매매의 형식은 放賣·報給·報恩·報納 등으로 나타났다.